2013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안내서

2013. 12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목 차

1 2013년 평가체계 개선 주요 내용 ····· 1

2 2013년 평가 추진 계획 ····· 3

3 2013년 평가 지표구성별 배점 구성 안 ····· 6

4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설명자료 ····· 7

5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설명 및 예시 ····· 14

6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변경 내용 ····· 25

7 샘플 ····· 28

[양식 1] 취 · 창업 확인서 양식 ····· 28

[양식 2] 재무회계 투명성 ····· 29

8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Q/A ····· 61

9 첨부자료 ····· 66

10 2013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항목 안내 ····· 71

1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관코드 및 자활사업 성과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 ····· 89

1 2013년 평가체계 개선 주요 내용

1. 상대평가지표는 절대평가지표로 전환

○ 수익금, 매출액 지표 및 신규지표 이외의 전체 지표는 모두 절대평가지표로 전환

○ 2012년 총 29개 지표 중 15개 절대평가지표(전체지표의 52%가 절대평가지표)

- 예외) 시장진입형 사업단 1인당 월평균 수익금과 매출액,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단 공익형 만족도와 비공익형 1인당 월평균 수익금과 매출액, 참여자 전문·민간자격증 취득비율, 자활기업 대표 만족도 조사, 참여자 사례회의 개최율, 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 네트워크 인식도 조사, 자활사업 홍보, 지자체 위탁사업 건수, 민간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지역 유관기관 공동연계 사업 건수

○ 2013년 총 25개 지표 중 20개 절대평가지표(전체지표의 80%가 절대평가지표)

- 예외) 시장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종사자 근속년수

2. '12년 평가결과 일부지표 수정 및 삭제

○ 기존기표 중 4개 지표 삭제, 2개 지표 수정(통합)

- 삭제지표(자활기업 전환 참여자 비율, 자활기업 대표 만족도 조사, 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 네트워크 인식도 조사, 지역취약계층 비율 대비 자활사업 일자리 기여율)

- 수정(통합)지표(전문, 민간 자격증취득비율 지표를 참여자 인적자본향상지원으로 통합, 지역유간기관 공동연계 사업 건수를 지자체 위탁사업, 민간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로 통합)

3. 점수의 평균을 상향화시키는 방식으로 구간 재조정

○ 12년 평가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좌경[1](right-skewed)에 치우친 분포를 우경[2](left-skewed) 분포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구간을 재조정함.

○ 최저임금기준적용을 완화하여 최저임금지급대상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채택

---

1) 자료의 대부분이 왼쪽에 치우치며 분포가 오른쪽으로 긴 오른쪽 꼬리분포를 이룸
2) 자료의 대부분이 오른쪽에 치우치며 분포가 왼쪽으로 긴 왼쪽 꼬리분포를 이룸

4. 신규평가 지표 적용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

○ 신규지표 2개 반영

- 종사자 근속년수: 2013년도 종사자 장기근속비율(3점)
- 외부기관 후원건수: 외부자원 후원연계 건수(3점)

5. 공정성과 전문성 우선 하는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위원회 운영

○ 목 적 : '13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 및 결과활용방안 논의

○ 일시 및 논의주제

- 1차 : '13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방향 및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 2차 : '13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평가지표 타당성에 대한 논의
- 3차 : '13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평가지표 시뮬레이션 결과 논의
- 4차 : '13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평가지표 배점구상안 및 구간논의, '14년 평가 활용방안 검토

○ 평가위원장(중앙자활센터장)과 복지부 및 보장기관관계자, 현장관계자, 전문가등으로 총 6인으로 구성

연번	소속	비고
1	중앙자활센터 원장	평가위원장
2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평가위원(복지부)
3	서울시 **구청	평가위원(지자체)
4	**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위원(전문가)
5	**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평가위원(전문가)
6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사무총장	평가위원(현장)

2 2013년 평가 추진 계획

□ 평가개요

○ 평가 대상기간: '13. 1. 1~'13. 12. 31(12개월)

○ 평가 방법: 성과관리시스템 및 서류평가

○ 평가자료입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성과관리시스템

○ 평가 추진체계

수행주체	역할 및 수행내용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 업무 총괄
중앙자활센터	평가업무 실무 총괄 (계획수립, 평가실행, 결과산출 등) ※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의2 제1항 3호에 따라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 토록함.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증빙공지, 평가자료 확인서 제출, 서류평가결과 및 이의신청확인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에 따른 기초자료 입력,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

□ 유형별 평가지표 변경

◇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85점**,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는 **특성화지표는 15점**

○ 기본 지표외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산하는 **'추가지표'를 3점의 범위내**에서 적용

1 공통지표 설정

○ 자활성과,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참여자 관리, 센터 운영 등의 5개 대지표로 설정·운영

2 특성화 지표 설정

○ 외부자원후원,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등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지역센터유형에 반영되는 지표로 설정

3 추가지표 설정

○ 총점 중 3점의 범위내에서 운영

- 평가대상기준 중 추가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평가 증빙서류 제출

○ 평가 증빙서류 제출방법

- 센터별로 각 2부를 작성(제본)하여 (공문첨부) 1부는 해당 지자체, 1부는 중앙자활센터에 제출
- 제출기한 : 2014년 2월 21일(금) 18시까지 도착분 (시간엄수)

  ※ 평가증빙서류 제출확인방법: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에 최종 마감 후 4일 이내에 최종 공지 예정임
- 주　소 : (100-86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7층 (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7층)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
- 기타문의 : 02) 3415-6934 / sparrow20@cssf.or.kr

□ 평가 세부일정

단계	구분	내 용	기간
사전 준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설명회	(중앙자활센터)평가(지표설명,증빙서류,시스템입력) 설명회	2013년 10월 22일(화)
1단계	기초자료 입력	(지역자활센터)행복e음 참여자 배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	2014년 1월 17일(금)까지
2단계	추가 입력	(지역자활센터)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2014년 1월 27(월) ~ 2월 14일(금)까지
3단계	평가 제출서류 양식 다운	(지역자활센터)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평가지표별 서류양식 다운	
4단계	평가 증빙서류 제출	(지역자활센터)평가지표별 증빙서류 제본 및 제출	2014년 2월 21일(금) (18까지) ※시간엄수
5단계	1차 결과 발표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시스템에 1차 결과 발표	2014년 4월 11일(금)
6단계	이의신청 기간	(중앙자활센터) 1차결과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2014년 4월 14일(월) ~ 4월 18일(금)
7단계	2차 결과발표	(중앙자활센터) 이의신청 반영된 2차 결과발표	2014년 4월 말
8단계	평가결과 산출	(중앙자활센터) 최종 평가 결과 산출	2014년 4월 말
9단계	최종결과 발표	(복지부) 최종 평가 결과 발표	2014년 5월 초

○ 평가지표 중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조사 일정

단계	구분	내 용	기간
1단계	지표별 세부내용 입력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이용자 입력(최소 5명입력을 하며, 사업단 이용자가 5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사업단에서 추가로 이용자를 입력 하여도 됨. 자세한방법 Q/A참고, P62)	2014년 1월 27(월) ~2월 14일(금)까지
2단계	설문문항 고지	(중앙자활센터) 공문을 통한 설문문항 고지	2014년 3월초
3단계	조사 실시	(외부 리서치 기관) 성과관리시스템 입력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2014년 3월말까지
4단계	결과 도출	(중앙자활센터)평가지표 산식에 반영	2014년 4월초

※ 평가 진행사항에 따라 세부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2013년 평가 지표구성별 배점 구성 안

구분	지 표 명			배점 13년	배점 12년
공통 지표 (85점)	① 자활 성과 (26)	자활 성공률	일반기업 취·창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바우처사업단·타기금 사업단 취업) 자활기업 취·창업률(차상위자 포함)	15	15
			탈수급률(자활특례 포함)	5	5
		취업 유지율	3개월 유지율	2	2
			6개월 유지율	4	3
	② 사업단 운영 (22)	시장 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3	3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3
			자활기업 전환 참여자 비율	삭제	2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4	3
			1인당 연평균 수익금	3	2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3
		참여자 인적자본 향상지원	전문자격증 취득비율(1년 이내) 민간자격증 취득비율(1년 이내) 상위학위 및 검정고시취득(교육부인정)	6	4
					2
	③ 자활기업 (7)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5	3
		자활기업 수급자 비율		2	2
		자활기업 대표 만족도 조사		삭제	3
	④ 참여자 관리 (12)	직무교육 이수율		4	4
		소양교육 이수율		4	3
		참여자 사례회의 개최율		4	3
	⑤센터 운영 (18)	종사자 1인당 직무교육 이수율(센터장 제외)		2	2
		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 네트워크 인식도 조사(센터기관 추천)		삭제	3
		기관 및 사업 관련 홍보 건수		3	3
		종사자 근속년수(신규)		3	–
		재무회계의 투명성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5	5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5	5
특성화 지표 (15점)	⑥외부자원 후원 (3)	외부기관 후원연계 건수(신규)		3	–
	⑦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6)	지자체 위탁사업(중앙정부사업 제외) 건수		3	3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3	3
		지역 유관기관 공동연계 사업(행사 제외) 건수		삭제	3
	⑧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6)	자활사업 미참여자 지역일자리 성공률		3	3
		지역취약계층 비율 대비 자활사업 일자리 기여율		삭제	3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공동사업, 워크숍, 행사 등)		3	2

4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설명자료[3]

□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참여대상 인정기준

○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게이트웨이,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이외 사업단은 제외[4]), 자활기업(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 참여자(실누계 인원, 중복자 제외) 중에서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단, 자활기업 참여자중 일반인은 최저임금 이상자만 포함)

- 바우처 참여자 제외, 조건불이행자 제외
- 게이트웨이(gateway)참여자는 자활성과(취 · 창업률, 탈수급률, 3개월 · 6개월 취업유지율)에서만 포함하며 다른지표에서는 제외

  ※ 단, 게이트웨이(gateway)과정에 30일 이상 참여한 참여자에만 한정
- 참여기간: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2013년 월 최저임금 : 1,015,740원
-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과 동일하게 평가

1. 공통지표(85점)

① 자활성과(26점)

지표명		정의 및 인정기준	세부산식	증빙서류	구간	점수
자활성공률(20)	취 · 창업률	– 정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차상위포함)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 이내에 취 · 창업한 경우 – 인정기준 ·취업: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이며, 월 급여(세전)70만원 이상	(취 · 창업자수+(취업자 중 최저임금 이상자수*0.5))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수	– 취업자 ① 취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②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취업기간 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1점: 3%이상~6%미만 3점: 6%이상~9%미만 5점: 9%이상~12%미만 7점: 12%이상~15%미만 9점: 15%이상~18%미만	절대평가(15)

3) 구체적인 내용은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설명 및 예시(p14) 참조**
4) 근로유지형, 인턴형 제외

지표명		정의 및 인정기준	세부산식	증빙서류	구간	점수
		·창업: 2013년 창업(사업자 등록증 기준) ※ 취업자중 최저임금(월 1,015,740원)이상을 만족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0.5배 가중치 부여		③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고용보험득실확인서 등) – 창업자 ① 사업자 등록증(창업자 기재) ※ 안내서 〔샘플 1〕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가능함. 단,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반드시 명시할 것	11점: 18%이상~21%미만 13점: 21%이상~24%미만 15점: 24%이상 ※ 3%미만은 0점	
	탈 수급률	– 정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수급자가 탈수급 한 경우 – 인정기준: 수급자(일반수급, 시설수급, 조건부수급)→자활특례, 차상위, 일반인 (연간 누계실인원, 중복자제외)	탈수급자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수급자수	– 상위유형 변경확인가능 증빙서류 (예. 지자체 공문 등)	1점: 0%초과~3%미만 2점: 3%이상~6%미만 3점: 6%이상~9%미만 4점: 9%이상~12%미만 5점: 12%이상~ ※ 0%이하는 0점	절대 평가 (5)
취업 유지 율 (6)	3개월	– 정의: **취업 성공자중** 3개월(90일)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 인정기준: 3개월 연속 월 급여70만원 이상 이며,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 취업일기준: 2012년 10월 3일부터~ ※ 단, 고용기간내에 직종의 특성상(예. 학교급식, 장애인통합보조원)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간 산입 후 인정 ※ 3개월 동안 동일취업기관을 인정하며 이직은 인정하지 않음.	취업성공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참여자수/ 취업성공자수	① 취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② **3개월 연속** 70만원 이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취업기간 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③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고용보험득실확인서 등)	1점: 90%미만 2점: 90%이상 ※ 없음은 0점	절대 평가 (2)
	6개월	– 정의: **취업 성공자중** 6개월(180일)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 인정기준: 6개월 연속 월 급여70만원 이상 이며,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 취업일기준: 2012년 7월 5일부터~ ※ 단, 고용기간내에 직종의 특성상(예. 학교급식, 장애인통합보조원)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간 산입 후 인정 ※ 6개월 동안 이직은 15일 이내에 1회만 인정하며 이직을 했을 경우 에는 퇴직일자와 재취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취업성공자 중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참여자수/ 취업성공자수	① 취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② **6개월 연속** 70만원 이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취업기간 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③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고용보험득실확인서 등)	1점: 70%미만 2점: 70%이상~80%미만 3점: 80%이상~90%미만 4점: 90%이상~ ※ 없음은 0점	절대 평가 (4)

* **취업성공자**: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이내에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 급여(세전) 7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업장에 취업한경우를 취업성공으로 인정함.

② 사업단 운영(22점)

지표명		정의 및 인정기준	세부산식	증빙서류	구간	점수
시장 진입형 사업단 (6)	1인당 연평균 수익금	– 정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사업단 분기별수익금총액의 합/ 사업단 연간총참여자수	① 지자체 공문(사본) * 연말 사업단별 매출액을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으로 최종정산(1/4분기~4/4분기)하여 지자체에 보고한 공문(사본)	1점: 하위 30% 2점: 중위 40% 3점: 상위 30%	상대 평가 (3)
	1인당 월평균 매출액	– 정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Σ(사업단 월매출총액/사업단 월참여자수)/ 사업기간월수	① 지자체 공문(사본) * 연말 사업단별 매출액을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으로 최종정산(1/4분기~4/4분기)하여 지자체에 보고한 공문(사본)	1점: 하위 30% 2점: 중위 40% 3점: 상위 30%	상대 평가 (3)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10)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전체 만족도	– 정의: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전체 만족도 – 대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서비스 수혜자	사업단 참여자 랜덤추출조사	– 시스템입력	1점: 70점미만 2점: 70점이상~80점미만 3점: 80점이상~90점미만 4점: 90점이상	절대 평가 (4)
	1인당 연평균 수익금	– 정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사업단 분기별수익금총액의 합/ 사업단 연간총참여자수	① 지자체 공문(사본) * 연말 사업단별 매출액을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으로 최종정산(1/4분기~4/4분기)하여 지자체에 보고한 공문(사본)	1점: 하위 30% 2점: 중위 40% 3점: 상위 30%	상대 평가 (3)
	1인당 월평균 매출액	– 정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Σ(사업단 월매출액총액/ 사업단 월참여자수)/ 사업기간월수	① 지자체 공문(사본) * 연말 사업단별 매출액을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으로 최종정산(1/4분기~4/4분기)하여 지자체에 보고한 공문(사본)	1점: 하위 30% 2점: 중위 40% 3점: 상위 30%	상대 평가 (3)
참여자 인적자본향상지원		– 정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에서 자격증(민간,전문)을 취득하거나 학위 및 상위학력(초, 중, 고, 검정고시 포함) 취득을 한 경우(교육부인정) – 인정기준: 취득일자가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이내 취득자 ※ 단, 2014년 학위취득예정자는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등)제출가능자만 인정 ※ 단, 전문자격증 취득자는 0.5배 가산점 부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자격증 취득자수*0.5))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수	① 자격증 사본 ② 학위취득증 사본(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1점: 0%초과~3%미만 2점: 3%이상~5%미만 3점: 5%이상~7%미만 4점: 7%이상~9%미만 5점: 9%이상~11%미만 6점: 11%이상 ※ 0%이하는 0점	절대 평가 (6)

③ 자활기업(7점)

지표명	정의 및 인정기준	세부산식	증빙서류	구간	점수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정의: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공제전) ※ 월 인건비에서 한시적 인건비 제외, 일반인은 최저임금 이상자	Σ(자활기업월인건비총액/월참여자수)/사업기간월수	①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한시적 인건비지원금액대상자별도표시)	1점: 최저임금이상~최저임금 110%미만 3점: 최저임금 110%~최저 임금120%미만 5점: 최저임금120%이상~ ※ 최저임금이하는 0점	절대평가(5)
자활기업 수급자 비율	– 정의: 자활기업 참여자 중 수급자 비율 – 인정기준: 평가기간 참여자 대상 참여시점 수급유형기준 ※ 자활특례자 포함	자활기업 수급자수/자활기업 참여자수	① 지자체수급유형서류(공문, 수급유형증명서등)	1점: 30%이하 2점: 30%이상	절대평가(2)

④ 참여자관리(12점)

지표명	정의 및 인정기준	세부산식	증빙서류	구간	점수
직무교육이수율	– 정의: 참여자 중 직무교육 이수자 비율 – 인정기준: 참여자의 직무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산출방법 설명 및 예시추가 참조(P20)	직무교육이수자수/참여자수	① 확인가능 한 문서첨부 * 자격증, 수료증, 참석확인공문, 내부결제문서 등	1점: 0%초과~85%미만 2점: 85%이상~90%미만 3점: 90%이상~95%미만 4점: 95%이상~ ※ 0%이하는 0점	절대평가(4)
소양교육이수율	– 정의: 참여자 중 소양교육 이수자의 비율 – 인정기준: 자활관련 지식함양, 근로의욕증진, 사업단 조직적응, 가치교육 등 ※ 산출방법 설명 및 예시추가 참조(P21)	소양교육이수자수/참여자수	① 확인가능 한 문서첨부 * 자격증, 수료증, 참석확인공문, 내부결제문서 등	1점: 0%초과~85%미만 2점: 85%이상~90%미만 3점: 90%이상~95%미만 4점: 95%이상~ ※ 0%이하는 0점	절대평가(4)
사례회의 개최율	– 정의: 지역자활센터의 사례회의 개최 건수 – 인정기준: 센터장, 전담관리자, 실장 및 담당 실무자등(종사자 3인이상 포함)으로 구성된 사례회의만 인정 ※ 사례회의는 1일 1건으로 인정함(단, 외부전문가 참석 변동이 있는 경우는 다건으로 인정) ※ 사례회의 일지에는 회의일시, 회의참가자, 회의주제, 대상자의 사정 및 서비스 개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사례회의건수	① 센터장 내부 결제 공문(결과보고) ② 사례회의 일지 ③ 외부전문가 이력서	1점: 12건이하 2점: 12건이상~18건미만 3점: 18건이상~24건미만 4점: 24건이상~	절대평가(4)

⑤ 센터운영(18점)

지표명		정의 및 인정기준	세부산식	증빙서류	구간	점수
종사자 1인당 직무교육 이수율		– 정의: 종사자 중 연30시간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 비율(센터장 제외) – 인정기준: 종사자 대상은 90일이상(3개월) 근무한 자로 기관 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희망키움통장 전담관리자, Gateway 사업단 전담관리자 포함 ※ 산출방법 설명 및 예시추가 참조	총 30시간 이상 교육이수 종사자 수/ 교육대상 종사자 수	①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수료증, 교육참가 공문 등(참석자 이름,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1점: 90%미만~ 2점: 90%이상~	절대평가 (2)
기관 및 사업관련 홍보건수		– 정의: 자활사업 및 센터운영의 홍보와 관련자료 관리 – 인정기준: 2013년 진행한 홍보만 인정(관련증빙 필수 첨부) ※ 동일행사에 다양한 홍보자료를 활용했을 경우 1건만 인정(언론홍보는 다건으로 인정)	– 언론홍보(방송, 신문, 잡지 등)건수 – 홍보자료(홈페이지, 소식지, 웹진 등) 활용건수	① 언론홍보 방송, 신문, 잡지 등(스크랩자료) ② 홍보자료(계획, 결과보고서)	1점: 15건미만 2점: 15건이상~30건미만 3점: 30건이상	절대평가 (3)
신규 종사자 근속년수		– 정의: 2013년도 종사자 장기근속비율 – 인정기준: 대상은 기관 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희망키움통장 전담관리자, Gateway 사업단 전담관리자 포함 ※ 순환보직자의 경우 법인 인사원칙 첨부	2013년 종사자 총 근속일수(주말휴일 포함) /2013년 종사자수(1일이상근무자)	①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12개월분(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발급가능) ※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 내역서(12개월분)제출 비해당자는 센터장 도장날인 후 별도표시(구체적 설명은 산출방법 설명 및 예시추가 참조) ② 인사원칙증빙서류(해당자만 첨부)	1점: 70%이상~100%미만 2점: 30%이상~70%미만 3점: 상위 30%이상	상대평가 (3)
재무회계 투명성 (10)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 정의: 지역자활센터의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류 제출	양식에 의거한 서류제출 유무	① 첨부 〔양식2〕 에 의거한 서류제출 유무	제출: 5점 미제출: 0점	절대평가 (5)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 정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시군구 보고에 대한 예산의 확립에 대한 서류제출	양식에 의거한 서류제출 유무	① 내부공문(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에 대한 내부공문) ※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기구를 대신하는 이사회 보고 자료도 인정가능	제출: 5점 미제출: 0점	절대평가 (5)

2. 특성화 지표(15점)

⑥ 외부자원 동원(3점)

지표명	정의 및 인정기준	세부산식	증빙서류	구간	점수
신규 외부자원후원 건수	– 정의: 외부자원 후원건수 – 인정기준: 2013년에 후원된 건으로 실질적인 재정적 자금후원, 물품후원 건수 ※ 재정적 후원, 물품후원 모두 2013년 누적건임.	외부자원 후원 건수	– 자원후원관련 공문, 자원후원관련 서류확인서 등	1점: 물품후원 10건미만 2점: 재정적후원 500만원미만 또는 물품후원 10건이상 3점: 재정적 후원 500만원 이상 ※ 없음은 0점	절대평가 (3)

⑦ 지역유형별 특화사업개발 및 발굴(6점)

지표명	정의 및 인정기준	세부산식	증빙서류	구간	점수
지자체 위탁사업 건수	– 정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에게 위탁한 사업건수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에서 공공기관 확인가능	위탁사업건수	– 위탁공문	1점: 5건미만 2점: 5건이상~10건 미만 3점: 10건이상 ※ 0건은 0점	절대평가 (3)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건수	– 정의: 민간기관 외부공모 및 위탁(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제외) 사업건수 ※ 공모 채택건 0.5배의 가산점	외부공모 및 위탁사업건수 +(공모를 통한 채택건*0.5)	– 공모지원서류, 채택공문, 위탁공문 등	1점: 6건 미만 2점: 6건 이상~12건 미만 3점: 12건 이상	절대평가 (3)

⑧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6점)

지표명	정의 및 인정기준	세부산식	증빙서류	구간	점수
자활사업 미참여자 지역일자리 성공률	- 정의: 자활사업 미참여자 지역일자리 성공에 대한 비율 - 인정기준: 자활근로사업 미참여자 중 취·창업한 자 ·취업: 최저임금(월 1,015,740원)이상 이며,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창업: 2013년 창업 경우(사업자 등록증 기준) ※ 지역일자리, 취성패, 희망리본, 근로유지형, 게이트웨이 참여자(지역자활센터에서 급여를 1회라도 수령한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됨)등은 제외	자활사업 미참여자 지역일자리 취창업자수/ 자역별 조건부과제외자 (유예자)수	- 취업자 ① 취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②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③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창업자 ① 사업자 등록증 - 사례관리자료	1점: 0%초과 ~ 0.5%미만 2점: 0.5%이상 ~ 1.5%미만 3점: 1.5%이상 ※ 0%은 0점	절대 평가 (3)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공동사업, 워크숍, 행사 등)	- 정의: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 - 인정기준: 사회적 경제 행위에 대한 다양성은 존중하나, 단순회의(결과보고 내용) 등은 제외됨 ※ 행사의 경우 주관주최가 아닌 경우 제외	네트워크 건수	- 관련공문 - 협약서	1점: 0건이상~5건 미만 2점: 5건이상~10건 미만 3점: 10건이상	절대 평가 (3)

5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설명 및 예시

1 공통지표

1. 자활성과

□ 자활성공률

○ 취 · 창업률

- 취업성공은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이내에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 급여(세전) 7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업장에 취업한경우를 취업성공으로 인정함
  ※ 단, 최저임금 월(1,015,740원)을 만족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가중치 0.5배를 부여함
- 창업성공은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이내에 창업을 한 경우를 창업성공으로 인정함

예시	A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전체 참여자수=100명 전체고용보험가입취업자=10명 (월 급여 70만원 미만자=1명, 월 급여 1,015,740원 이상자=5명) 창업자=3명 ➡ 이 경우 A지역자활센터의 취·창업성공률은? { [취·창업자수+(취업자 중 최저임금 이상자수*0.5)]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수 } *100 $\frac{12+(5*0.5)}{100}*100=14.5\%$ * 참여자수와 성공자수에 게이트웨이(gateway)30일 이상 참여자 만 포함됨.

※ 고용보험 자격확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 만일 고용보험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1〕 을 활용하여 제출하되,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할 것

○ 탈수급률

- 탈수급률은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수급자(일반수급, 시설수급, 조건부수급)가 자활특례, 차상위, 일반인으로 탈수급한 경우를 탈수급성공자로 함

□ 취업유지율

※ 취업성공자: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이내에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 급여(세전) 7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업장에 취업한경우를 취업성공으로 인정함.

○ 3개월: 취업성공자 중에서 연속 3개월(90일)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취업일기준: 2012년 10월 3일부터~)

- 단, 고용기관의 특성상 급여가 특정기간동안(예. 방학)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가 미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고용 기간을 인정(예. 학교급식, 장애인통합보조원)
- 3개월 동안 동일기관취업을 인정하며 이직은 인정하지 않음

  ※ 자활근로사업 종료시점: 2012년 9월 3일부터~

○ 6개월: 취업성공자 중에서 연속 6개월(180일)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취업일기준: 2012년 7월 5일부터~)

- 단, 고용기관의 특성상 급여가 특정기간동안(예. 방학)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가 미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고용 기간만을 인정(예. 학교급식, 장애인통합보조원)
- 6개월 동안 이직은 15일 이내에 1회만 인정하며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일자와 재취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자활근로사업 종료시점: 2012년 6월 5일부터~

2. 사업단 운영

□ 시장진입형사업단

○ 1인당 연평균 수익금

-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 수익금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평균 수익금 산정에 취함
  - 수익금은 분기별로 계산(자활사업안내와 동일, 참여자는 연간실인원으로 중복자 제외)

•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수익금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

※ 사업단 운영의 월기간만 인정(예: 2013년 1월에서~2013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한 사업단은 10개월로 산출)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사업단	1분기 (참여자수/월수익금)	2분기 (참여자수/월수익금)	3분기 (참여자수/월수익금)	4분기 (참여자수/월수익금)
○○	2/100	3/300	2/200	2/200
★★	2/100	3/200	3/200	2/200

○○ 사업단: (100+300+200+200)/3 ———①

★★ 사업단: (100+200+200+200)/3 ———②

➡ A지역자활센터 1인당 연평균 수익금= (① + ②)/2개 사업단

○ 1인당 월평균 매출액

-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 매출액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월평균 매출액 산정에 취함
  - 매출액을 카드대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인정(지자체 수익금 및 매출액 보고자료와 동일하게 적용)
  -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의 유형(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을 변경한 경우 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매출액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

※ 사업단 운영의 월기간만 인정(예: 2013년 1월에서~2013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한 사업단은 10개월로 산출)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사업단	1월 (참여자수/월매출액)	2월 (참여자수/월매출액)	3월 (참여자수/월매출액)	4월 (참여자수/월매출액)	5월 (참여자수/월매출액)
○○	2/100	3/300	2/200	2/200	2/200
★★		3/200	3/200	2/200	

○○ 사업단: (100/2+300/3+200/2+200/2+200/2)/5개월 ———①

★★ 사업단: (200/3+200/3+200/2)/3개월 ———②

➡ A지역자활센터 1인당 월평균 매출액= (① + ②)/2개 사업단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 수익금&매출액 평가시 제외되는 사업단(2013 자활근로사업안내 p87) 〉 ① 간병서비스 사업단 ② 장애인통합보조교육 사업단 ③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사업단 ④ 시군구의 결정으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단(지자체 승인공문 첨부) ※ 단, 상위 사업단을 제외한 수익형사업단을 비수익형으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확인 후 임의로 변환가능

○ 사회서비스형 전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제공한 재화(상품)나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로 조사로 지역자활센터에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최소입력인원 5명 기준) 중앙자활센터에서 랜덤으로 추출하여 전화조사 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예정

※ 다만, 사업단이용자가 5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단에서 추가로 이용자를 입력하여도 됨

예시	★★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한 사회서비스 사업단이 총 4개일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입력최소인원은? - 4개의 사업단 * 5명 =20명의 총원을 입력하여야 함.

○ 1인당 연평균 수익금

-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 수익금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평균 수익금 산정에 취함
  - 수익금은 분기별로 계산(자활사업안내와 동일, 참여자는 연간실인원으로 중복자 제외)
  -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 유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수익금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

※ 사업단 운영의 월기간만 인정(예: 2013년 1월에서~2013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한 사업단은 10개월로 산출)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사업단	1분기 (참여자수/월수익금)	2분기 (참여자수/월수익금)	3분기 (참여자수/월수익금)	4분기 (참여자수/월수익금)
○○	2/100	3/300	2/200	2/200
★★	2/100	3/200	3/200	2/200

○○ 사업단: (100+300+200+200)/3 ———①

★★ 사업단: (100+200+200+200)/3 ———②

➡ A지역자활센터 1인당 연평균 수익금= (① + ②)/2개 사업단

○ 1인당 월평균 매출액

-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 매출액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월평균 매출액 산정에 취함
  - 매출액을 카드대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인정(지자체 수익금 및 매출액 보고자료와 동일하게 적용)
  -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의 유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을 변경한 경우 에는 평가기간 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매출액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

※ 사업단 운영의 월기간만 인정(예: 2013년 1월에서~2013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한 사업단은 10개월로 산출)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사업단	1월 (참여자수/월매출액)	2월 (참여자수/월매출액)	3월 (참여자수/월매출액)	4월 (참여자수/월매출액)	5월 (참여자수/월매출액)
○○	2/100	3/300	2/200	2/200	2/200
★★		3/200	3/200	2/200	

○○ 사업단: (100/2+300/3+200/2+200/2+200/2)/5개월 ———①

★★ 사업단: (200/3+200/3+200/2)/3개월 ———②

➡ A지역자활센터 1인당 월평균 매출액= (① + ②)/2개 사업단

□ 참여자 인적자본향상지원

-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동안에 자격증(민간, 전문)을 취득하거나 학위 및 검정고시(교육부인정)를 취득한 경우
- 전문자격: 전문자격은 국가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에 등록되거나 국가자격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함
-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에 공인되거나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인적자본향상지원율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수=100명(gateway참여자 제외) 전문자격 취득자수: 3명, 민간자격 취득자수: 5명, 학위 및 검정고시 취득자수: 2명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중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위 및 검정고시를 취득한 인원+(전문자격 취득자수*0.5)〕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수 } *100 ➡ $\frac{10+(3*0.5)}{100}*100$=11.5%

3. 자활기업

○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공제전)으로 각 자활기업의 매월 참여인원 급여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사업기간 동안의 평균값으로 최종 산출함
- 센터에 복수의 자활기업이 있으므로 각 자활기업의 평균값을 자활기업수로 나눈 값이 센터의 자활기업 1인당 월평균 급여액으로 산출함
- 자활기업 인건비는 사회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함
- 일반 참여자는 최저임금 월(1,015,740원)이상자만 포함

자활기업 수에 포함된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는 참여자 중 한시적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자체 수익에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참여자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총액에 포함

예시

자활기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활기업	참여자수	2	3	2	2	2	2	3	2	2	2	2	3
	인건비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자활기업	참여자수	2	3	2	2	2	2	3	2	2	2	2	3
	인건비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 ○ 자활기업 1인당 월평균 급여계산 {(200만원/2)+(300만원/3)+(200만원/2)+(200만원/2)+(200만원/2)+(200만원/2)+(300만원/3)+(200만원/2)+(200만원/2)+(200만원/2)+(200만원/2)+(300만원/3)}/12개월=1,000,000원 2. ★ 자활기업 1인당 월평균 급여계산 {(200만원/2)+(300만원/3)+(200만원/2)+(200만원/2)+(200만원/2)+(200만원/2)+(300만원/3)+(200만원/2)+(200만원/2)+(200만원/2)+(200만원/2)+(300만원/3)}/12개월=1,000,000원 3. 최종 자활기업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자활기업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자활기업 1인당 월평균 급여액)/자활기업 수 = (1,000,000원 + 1,000,000원)/2=1,000,000원

○ 자활기업 수급자 비율

- 자활기업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 중에 평가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의 자활기업 참여자 중에서 참여시점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의 수급자 비율

4. 참여자 관리

○ 직무교육이수율

-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중 직무교육 이수자의 비율임

- 온라인교육(유·무료)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직무교육 인정범위	① 중앙/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부, 가사간병교육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한 교육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교육 ③ 그 외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간에서 이수한 교육 ④ 기관 자체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만 인정(전문강사 기준 공개:첨부자료 P69참고) ※ 해당센터 참여자의 직무(경영, 회계 등), 직능 및 사업단과 관련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만을 인정함. ※ 외부강사초빙 교육시에는 내부결재공문(외부강사,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명시한 증빙서류 제출)
제외 예시	① 단순한 정책소개(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단순신용관리안내, 자활사업입문교육 등), 사업기준안내(취성패, 희망리본, 희망키움통장 안내, 협동조합기본법안내 등)은 불인정 ② 법정교육(성희롱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화재예방교육, 산재예방교육)은 불인정 ③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교육은 불인정 ④ 근로의욕증진, 근골격계 예방교육은 불인정 ⑤ 심리관련교육(음악치료, 연극치료 등) 불인정 ⑥ 해당사업 평가회의, 해외연수는 교육에서 제외 ※ 견학프로그램에 대하여 서류 불충분(방문기관 내용 미첨부)할 경우는 불인정 ※ 신청서만 있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는 불인정하며, 신청서나 내부계획만 제출한 경우도 불인정 ※ 소양교육에 이중으로 입력한 경우 불인정

	※ 동일날짜에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모두 진행한 경우는 한분야에서만 인정(내용이 분리된 경우도 불인정함)

○ 소양교육이수율

-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중 소양교육 이수자의 비율임

- 온라인 교육(유·무료)의 경우 50%만 인정함

소양교육 인정범위	① 중앙/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부, 가사간병교육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한 교육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교육 ③ 그 외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간에서 이수한 교육 ④ 기관 자체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만 인정(전문강사 기준 공개: 부록참고) ※ 자활관련지식 함양, 근로의욕증진, 사업단 조직적응, 가치교육 등의 여부인지를 확인하여 인정 ※ 외부강사초빙 교육시에는 내부결재공문(외부강사,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명시한 증빙서류 제출)
제외 예시	① 단순 지자체 및 법인 행사(체육대회, 단합대회)는 불인정 ② 교육이 없는 힐링프로그램 형식(제주도 방문 등)은 불인정

○ 사례회의(1일 1건으로 인정함. 단, 외부전문가 참석 변동이 있는 경우는 다건으로 인정)

-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센터장, 전담관리자, 실장 및 담당 실무자 등(종사자 3인이상 포함)으로 구성된 사례회의만 인정함(필요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 참여도 종사자로 인정)

- 사례회의 일지에는 회의일시, 회의참가자, 회의주제, 사례회의 내용 포함되어야 함

- 사례회의 내용(2013 자활근로사업안내 p47)
  - 대상자 사례관리 경과 및 특이사항 점검
  - 개인별 ISP 현실성 검토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서비스 연계 협의 등

5. 센터운영

○ 종사자 1인당 직무교육 이수율

- 종사자 중 연 30시간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 비율

종사자교육 인정범위	① 중앙/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부, 가사간병 교육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한 교육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교육 ③ 그 외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④ 기관 자체교육, 워크샵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강의시간 경우만 인정 (외부강사초빙에 대한 내용 포함된 교육결과보고문서 첨부) ⑤ 유 · 무료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
제외 예시	※ 종사자 입·퇴사자 발생시 퇴사자의 교육이수시간이 신규종사자로 승계되지 않음. ※ 평가기간 중 종사자에서 센터장으로 승진되는 경우에는 종사자수 등 모든 평가에 산정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례관리자는 종사자에서 제외됨. ※ 종사자가 평가기간 동안 임신, 병가 등의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됨. ※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의 종사자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자격증 자체로는 교육인정이 안되며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공문 등)를 제출해야 함. ※ 종사자 교육에서 해외연수는 제외됨. ※ 회의 및 간담회 등은 제외됨. ※ 대학학위과정 제외, 시간확인불가 증방자료제외됨. ※ 책을 우편으로 받아서 공부하고, 사이버시험 후 수료하는 교육등은 제외됨. ※ 법정 의무교육은 평가에서 제외됨. (예시)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7항)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 ○ 지자체 보조사업자 의무교육 ○ 조직 관리 참여자 의무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u>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진행된 특화교육 중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은 제외됨.</u> ※ 종사자 공통으로 진행되는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시간에서 제외됨.

※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집합교육: 이수시간의 100%인정
- 온라인교육: 이수시간의 50%인정

○ 기관 및 사업관련 홍보건수

- 홍보 : 2013년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한 자활사업 및 센터운영의 홍보와 관련자료 관리로 언론홍보와 홍보자료로 나뉨

① 언론홍보: 방송, 신문, 잡지에 해당하며 이를 스크랩하여 제출한 자료
같은 주제의 동일행사에 대하여 언론홍보의 경우 다건으로 인정함

② 홍보자료: 홈페이지, 소식지, 웹진 등 활용건수

같은 주제의 동일행사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자료를 활용했을 경우는 1건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홍보건수는? – A지역자활센터가 2013년 가을 바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역신문 A, B와 지역방송 A에 홍보를 하였고,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개시하였음. – A지역자활센터가 2013년 간병도우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와 웹진을 이용하였음. ➡ 이때에 A지역자활센터의 홍보건수는 5건임. – 2013년 가을 바자회를 위한 A지역신문 홍보건(1건) – 2013년 가을 바자회를 위한 B지역신문 홍보건(1건) – 2013년 가을 바자회를 위한 A지역방송 홍보건(1건) – 2013년 가을 바자회를 위한 홈페이지, 소식지 홍보건(1건) – 2013년 간병도우미 사업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웹진 홍보건(1건)

○ 종사자 근속년수(임신, 병가로 인한 휴직자도 모두 포함)

- 종사자의 장기근속 비율로 2013년 종사자수(1일이상근무자)대비 2013년 종사자 총 근속일(주말휴일포함)수임

- 평가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종사자(예: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이 되지 않는 종사자)는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12개월분)에 사유를 표기하고 센터장 도장 날인 후 제출

※ 개인별 보험료 고지내역서는 해당지역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EDI서비스(http://edi.nhis.or.kr/)를 통해서 발급 가능함.

2 특성화 지표

6. 외부자원 동원

○ 외부자원후원 건수

- 2013년에 이루어진 누적 후원건으로 신규사업개발, 공동사업 실행을 위한 외부자원 후원(실질적인 재정적 자금후원, 물품후원)건수를 의미함

7. 지역유형별 특화사업개발 및 발굴

○ 지자체 위탁사업 건수(공공기관 포함)

-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에게 위탁한 사업건수임
  - 공공기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등록된 공공기관만 인정함

○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건수

- 민간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 제외) 외부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임
  -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외부공모사업에 지원만 한 경우는 1건으로 인정되며, 지원한 공모사업이 채택한 경우 0.5배의 가산점을 부여함

※반드시 관련서류(내부결제 및 해당공모 내용 증빙서류) 첨부

8.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 자활사업 미참여자 지역일자리 성공률

-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미참여자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성공에 대한 측정지표임
-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미참여자에 대한 취업 및 창업확인서만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미참여자에 대한 센터내 사례관리일지는 반드시 첨부(미제출시 제외)
- 취업인정: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최저임금 월1,015,740원,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를 취업성공으로 인정함
- 창업인정: 평가대상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창업을 한 경우를 창업성공으로 인정함
- 지역공동체일자리, 희망리본, 취성패, 근로유지형, 게이트웨이 참여자 등(지역자활센터에서 급여를 1회라도 수령한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공동사업, 워크숍, 행사 등)

-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로 평가기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사회적경제 주체와 지역자활센터가 공동주관하거나 공동주최하여 진행된 사회적경제관련 워크숍, 행사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관의 당해년도 공동사업(업무협약서, 양해각서)을 진행한 경우 인정함

6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변경 내용

지표				2012년	2013년
공통지표	자활성과	자활성공률	취·창업률	○ 정의: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가 ☞ 일반기업 취창업, ☞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사업단 취업, ☞ 자활기업 취창업한 경우 ○ 인정기준: 최저임금이상자 중 고용보험 자격취득, 주 40시간 이상 2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참여자	○ 정의: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 ☞ 종료 후 1개월(30일) 이내 취창업자 ○ 인정기준: – 취업: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월 급여(세전)70만원 이상 – 창업: 2013년 창업자(사업자 등록증 기준) ※ 취업자 중 최저임금(월 1,015,740원)이상을 만족하는 인원은 0.5배 가중치부여
			탈수급률	–	전년과 동일
		취업유지율	3개월	○ 정의: 자활성공자 중 취업자가 연속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 취업성공자: 일반기업 취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취업, 자활기업으로 취업한자 중에서 최저임금 이상자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주 40시간 이상 2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참여자 ○ 취업일 인정기준: 2011년 10월 1일부터~	○ 정의: 취업성공자가 연속 3개월(90일)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 취업성공자: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 종료 후 30일 이내 고용보험자격 및 월 급여(세전) 70만원 이상을 받는 사업장 취업한자 ○ 취업일 인정기준: 2012년 10월 3일부터~ ○ 단, 고용기관의 특성상 급여가 특정기간동안(예. 방학)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가 미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고용 기간을 인정(예. 학교급식, 장애인통합보조원) ○ 3개월동안 동일취업기관을 인정하며 이직은 인정하지 않음
			6개월	○ 정의: 자활성공자 중 취업자가 연속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 취업성공자: 일반기업 취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취업, 자활기업으로 취업한자 중에서 최저임금 이상자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주 40시간 이상 2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참여자 ○ 취업일 인정기준: 2011년 7월 1일부터~	○ 정의: 취업성공자가 연속 6개월(180일)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 취업성공자: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 종료 후 30일 이내 고용보험자격 및 월 급여(세전) 70만원 이상을 받는 사업장 취업한자 ○ 취업일 인정기준: 2012년 7월 5일부터~ ○ 단, 고용기관의 특성상 급여가 특정기간동안(예. 방학)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가 미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고용 기간을 인정(예. 학교급식, 장애인통합보조원) ○ 6개월 동안 이직은 15일 이내에 1회만 인정하며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일자와 재취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사업단운영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	전년과 동일
			1인당 월평균 매출액	–	전년과 동일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	○ 정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 이용업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 정의: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전체 일자리 만족도 ○ 대상: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수혜자)

지표				2012년	2013년
			사업단 전체 만족도		
			1인당 연평균 수익금	–	전년과 동일
			1인당 월평균 매출액	–	전년과 동일
	참여자 인적자본향상지원			○ 참여자 전문자격증, 민간자격증 취득비율 ○ 자격증 취득인정일: 2010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 참여자 전문, 민간자격증 및 학위취득비율 ○ 자격증 취득인정일: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이내 취득자 ☞ 학위 및 검정고시(교육부인정학위) 취득 ☞ 전문자격증에 대하여는 0.5배 가산점 부여
	자활기업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전년과 동일
		자활기업 수급자 비율		–	전년과 동일
	참여자 관리	직무교육이수율		–	전년과 동일(단, 온라인교육은 불인정)
		소양교육이수율		–	전년과 동일
		사례회의 개최율		○ 정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에 사례회의 개최율 ○ 인정기준: 센터장을 포함하여 주관한 사례회의 인정, 지자체 사례회의 인정	○ 정의: 지역자활센터 사례회의 건수 ○ 실무자 등(종사자 2인이상 포함)으로 구성된 사례회의만 인정 ☞ 사례회의 일지에는 회의일시, 회의참가자. 회의주제, 사례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센터 운영	종사자 1인당 직무교육 이수율		–	전년과 동일
		기관 및 사업관련 홍보건수		○ 정의: 자활사업 및 센터운영의 홍보에 대한 건수 ○ 동일행사 및 동일사안 홍보는 1건으로 인정	○ 정의: 자활사업 및 센터운영의 홍보와 관련자료 관리 ○ 홍보를 언론홍보(방송, 신문, 잡지)와 홍보자료(홈페이지, 소식지, 웹진)로 구분하여 언론홍보의 수단을 이용하였을 경우 동일행사 및 동일사안에 대한경우도 다건으로 인정함.(홍보자료는 1건)
		종사자 근속년수		–	(신규지표) ○ 정의: 2013년도 종사자 장기근속비율 ○ 대상 인정기준: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희망키움통장 전담관리자, Gateway사업단 전담관리자 포함 ☞ 법인 인사원칙에 의한 순한보직의 경우 연속근무로 신청(단, 인사원칙 증빙서류 제출)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제출 비해당자는 센터장 도장 날인 후 별도 표기

지표			2012년	2013년
특성화지표	외부자원동원	외부자원후원 건수	-	(신규지표) ○ 정의: 외부자원 후원건수 ○ 인정기준: 2013년 후원된 건으로 실질적인 재정적 자금후원, 물품후원 누적건수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자자체 위탁사업 건수	○ 정의: 지자체가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에게 위탁한 사업건수(중앙정부사업 제외)	○ 정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에게 위탁한 사업건수(중앙정부사업 포함)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 정의: 민간기관 및 외부공모사업(해당 지자체 제외)으로 지역 자활센터 및 사업단에게 위탁한 사업건수	○ 정의: 전년과 동일 ☞ 공모를 통한 채택건은 0.5배의 가산점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자활사업 미참여자 지역일자리 성공률	○ 정의: 자활사업 미참여자에 대한 지역일자리 성공에 대한 비율 ○ 인정기준: 최저임금이상자 중 고용보험취득, 주 40시간 이상 2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참여자	○ 정의: 전년과 동일 ○ 인정기준: ☞ 취업: 월 급여 최저임금이상이며, 고용보험자격 취득자 ☞ 창업: 2013년 창업(사업자 등록증 기준)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공동사업, 워크숍, 행사 등)	○ 정의: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	○ 정의: 전년과 동일 ☞ 단순회의(결과보고 내용)등 제외 ☞ 행사의 경우 주관, 주최가 아닌 경우 제외

7 샘플

[양식 1] 취·창업 확인서 양식

성명			
성별	남(　　) / 여(　　)	연령	만(　　)세
주소			
취업처명		업종	
업체주소	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업체규모(근무자수) :		
월급여	(　　)만원	취업일자	
		퇴직일자	
주당근무시간	주(　　)시간　근무시간 :		
4대보험 가입여부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국민연금 ☐ 고용보험(*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산재보험		
확인자 성명		확인자 전화번호 (H.P)	

상기인은 2012년 (　　)월 (　　) 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직인)

용　도 : 기관제출용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확인방법?** 취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전화로 확인가능함

[양식 2] 재무회계 투명성 :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양식

(본 양식은 지역자활센터 재무회계 점검 양식과 동일하고, 향후 센터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년 자활사업 추진 현황

2013년

○ ○ 지 역 자 활 센 터

◈ 목 차 ◈

Ⅰ. 일반현황 ····· 33

Ⅱ. 재무 · 회계관리 ····· 37

Ⅲ. 자산 현황 ····· 57

Ⅰ. 일반현황

1. 센터 개요

센터명		센터장	
규모		설립일	
모법인		대 표	
소재지		전화번호	

2.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원 현황			비고
	계	정규직	계약직 등	
계				
센터 운영 (규모별 지원)				
사례관리자 (Gateway, 희망키움통장, 자활사례관리)				
기타				

3.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사업명	참여자 현황			
	계	수급자	차상위자	기타
계				
자활근로				
Gateway				
자활공동체				
희망키움통장				
기타				

4. 자활근로사업단 및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사업단명	유형	설립일	참여자 현황			
			계	수급자	차상위자	기타
계	–	–				
○○사업단	시장진입형					
○○사업단	...					
○○사업단	...					
○○사업단	...					
.....						

5. 자활기업(자활공동체) 현황

(단위 : 명)

자활기업명		설립일	참여자 현황			
			계	수급자	차상위자	기타
계		–				
'10년 이후 설립	소계					
	○○기업					
	○○기업					
	○○기업					
	.....					
'10년 이전 설립	소계					
	○○기업					
	○○기업					
	○○기업					
	.....					

※ 최근에 설립된 자활기업 순서로 기재

6.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합계 (A+B)	2012년			2013년										
			소계 (A)	1기 (4월)	2기 (10월)	소계 (B)	1기 (3월)	2기 (4월)	3기 (5월)	4기 (6월)	5기 (7월)	6기 (8월)	7기 (9월)	8기 (10월)	9기 (11월)	10기 (12월)
가입가구(ⓐ)																
해지 가구 (ⓑ)	중도해지															
	특별중도															
전출입 가구 (ⓒ)	전입															
	전출															
유지가구 (ⓐ-ⓑ±ⓒ)																

7.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현황

구분		2013년										
		소계 (A)	1기 (3월)	2기 (4월)	3기 (5월)	4기 (6월)	5기 (7월)	6기 (8월)	7기 (9월)	8기 (10월)	9기 (11월)	10기 (12월)
가입가구(ⓐ)												
해지 가구 (ⓑ)	중도해지											
	특별중도											
전출입 가구 (ⓒ)	전입											
	전출											
유지가구 (ⓐ-ⓑ±ⓒ)												

8. 자활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

연도	사업 유형	참여자 수			자활성과				비고
		계	수급자	차상위자 등	계	탈수급	수급 유지		
							취업	창업	
2010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1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2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3년	계								
	자활근로								
	Gateway								

9. 탈수급자 유형 분류

(단위 : 명)

연도	사업 유형	계	취업	창업	기타	자활특례
2010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1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2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3년	계					
	자활근로					
	Gateway					

II. 재무회계관리

총괄	’○○년 센터 전체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총 계 (A =B+C)				
자활사업(B)	소 계			
	1.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수입·지출 현황			
	2. 자활근로사업(전체) 수입·지출 현황			
	2-1.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전체) 수입·지출 현황			
	2-1-1. ○○사업단(시장진입형) 수입지출 현황			
	……			
	2-2.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전체) 수입·지출 현황			
	2-2-1. ○○사업단(사회서비스형) 수입지출 현황			
	……			
	3. Gateway 수입·지출 현황			
	4.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5. 자활사례관리			
자활사업외(C)	소 계			
	6.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계)			
	6-1. 가사간병서비스			
	……			
	7. 노인장기요양보험			
	8. 기타 사업(계)[5]			
	8-1. ○○사업			
	……			

5) 기타 사업 : 위 1~6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센터에서 수행하는 다른 모든 사업
(예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1 ’○○년 센터 운영비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3">수 입</th><th colspan="4">지 출</th><th>비고</th></tr>
<tr><td colspan="2">총사업지원(G+E)</td><td></td><td colspan="2">총사업비(B=W+C+K)</td><td></td><td></td><td rowspan="14"></td></tr>
<tr><td rowspan="7">정부
지원
(G)</td><td colspan="2">소계(G=G1+G2)</td><td></td><td rowspan="12">총
사업비
(B)</td><td rowspan="4">인건비
(W)</td><td>소계 (W=W1+W2+W3)</td><td></td></tr>
<tr><td colspan="2">국비(G1)</td><td></td><td>기본급(W1)</td><td></td></tr>
<tr><td rowspan="4">지방비
(G2)</td><td>소계(G2)</td><td></td><td>각종수당(W2)</td><td></td></tr>
<tr><td></td><td></td><td>사회보험료(W3)</td><td></td></tr>
<tr><td></td><td>시도비</td><td></td><td rowspan="6">사업비
(C)</td><td>소계
(C=C1+C2+C3+C4+C5)</td><td></td></tr>
<tr><td></td><td></td><td></td><td>시설·장비·차량 구입 및
임차료(C1)</td><td></td></tr>
<tr><td></td><td></td><td></td><td>공과금(C2)</td><td></td></tr>
<tr><td></td><td>시군구비</td><td></td><td>업무추진비(C3)</td><td></td></tr>
<tr><td rowspan="2">기타
(E)</td><td colspan="2" rowspan="2">추가지원</td><td rowspan="2"></td><td>교육·훈련비(C4)</td><td></td></tr>
<tr><td>기타(C5)</td><td></td></tr>
<tr><td></td><td>기타(K)</td><td>집행 잔액</td><td></td></tr>
</table>

1) 센터 종사자 수 : 명

- 센터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근무 5명, 6개월 근무 1명일 경우 종사자 수를 5.5명으로 기재

산출내역 : 5명 × 12 / 12개월 + 1명 × 6 / 12개월 = 5.5명)

2) **각종 수당** :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3) **공과금 :** 우편통신비 및 각종 세금

4) **업무추진비** :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비용, 교통 여비 등

2 ’○○년 자활근로사업 전체 수입지출 현황

※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수입·지출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6)+(8)+(9)				총계 (⑫+e+f)				
총사업지원(6)=(4)+(5)				총사업비(⑫=④+⑩+⑪)				
정부 지원(5)	소계(3=1+2)			총사업비 ⑫	인건비 ④	소계 (④=①+②+③)		
	국비(1)					급여액①		
	지방비 (2)	소계(2)				각종수당②		
						사회보험료③		
		시도비			사업비 ⑩	소계(⑩=⑤+⑥+⑦+⑧+⑨)		
		시군구비				직접사업비⑤		
						시설장비 임대료⑥		
						공과금⑦		
기타(4)	추가지원					업무추진비⑧		
						기타⑨		
					기타⑪	집행 잔액		
당해년(‘○○년)매출액(8)				매출총지출(e=a+b+c+d)				
				매출액 지출(a=a1+a2)				
						직접사업비(a1)		
						초과.휴일근무 수당(a2)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b)				
				매출적립금으로 사용 (c=c1+c2)				
						자활기업창업자금 (c1)		
						활성화지원금(c2)		
				수익금으로 적립(d=d1+d2+d3)				
						내일키움수익금(d1)		
						자립성과금(d2)		
						수익금사용잉여금(d3)		

수 입				지 출				비고
(매출적립금 · 수익금) 이월액 및 수입총계(9)				(매출적립금 · 수익금) 지출액 및 잔액총계(f)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이월액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자활기업창업자금	이월액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활성화지원금	이월액			활성화지원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이월액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자립성과금	이월액			자립성과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수익금사용잉여금	이월액			수익금사용잉여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1) 참여자 수 :　　명,　　실 참여자 수(누계)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참여 50명, 10개월 참여 30명, 6개월 참여 10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50명 × 12/12월 + 30명 ×10/12월 + 10명× 6/12월 = 80명)

2) 각종 수당 : 실비, 전담관리자 수당 (기술 · 자격자 수당은 급여액에 포함)

2-1 ’○○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전체 수입·지출 현황

※ 전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수입·지출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6)+(8)+(9)				총계 (⑫+e+f)				
총사업지원(6)=(4)+(5)				총사업비(⑫=④+⑩+⑪)				
정부 지원(5)	소계(3=1+2)			총사업비 ⑫	인건비 ④	소계 (④=①+②+③)		
	국비(1)					급여액①		
	지방비 (2)	소계(2)				각종수당②		
						사회보험료③		
		시도비			사업비 ⑩	소계(⑩=⑤+⑥+⑦+⑧+⑨)		
		시군구비				직접사업비⑤		
						시설·장비 임대료⑥		
						공과금⑦		
기타(4)	추가지원					업무추진비⑧		
						기타⑨		
					기타⑪	집행 잔액		
당해년(‘○○년)매출액(8)				매출총지출(e=a+b+c+d)				
				매출액 지출(a=a1+a2)				
						직접사업비(a1)		
						초과.휴일근무 수당(a2)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b)				
				매출적립금으로 사용 (c=c1+c2)				
						자활기업창업자금 (c1)		
						활성화지원금(c2)		
				수익금으로 적립(d=d1+d2+d3)				
						내일키움수익금(d1)		
						자립성과금(d2)		
						수익금사용잉여금(d3)		

수 입				지 출				비고
(매출적립금 · 수익금) 이월액 및 수입총계(9)				(매출적립금 · 수익금) 지출액 및 잔액총계(f)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이월액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자활기업창업자금	이월액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활성화지원금	이월액			활성화지원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이월액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자립성과금	이월액			자립성과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수익금사용잉여금	이월액			수익금사용잉여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1) **참여자 수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참여 50명, 10개월 참여 30명, 6개월 참여 10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2) **각종 수당** : 실비, 전담관리자 수당 (기술 · 자격자 수당은 급여액에 포함)

2-1-1 ’○○년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6)+(8)+(9)				총계 (⑫+e+f)				
총사업지원(6)=(4)+(5)				총사업비(⑫=④+⑩+⑪)				
정부 지원(5)	소계(3=1+2)			총사업비 ⑫	인건비 ④	소계 (④=①+②+③)		
	국비(1)					급여액①		
	지방비 (2)	소계(2)				각종수당②		
						사회보험료③		
		시도비			사업비 ⑩	소계(⑩=⑤+⑥+⑦+⑧+⑨)		
		시군구비				직접사업비⑤		
						시설·장비 임대료⑥		
기타(4)	추가지원					공과금⑦		
						업무추진비⑧		
						기타⑨		
					기타⑪	집행 잔액		
당해년(‘○○년)매출액(8)				매출총지출(e=a+b+c+d)				
				매출액 지출(a=a1+a2)				
						직접사업비(a1)		
						초과.휴일근무 수당(a2)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b)				
				매출적립금으로 사용 (c=c1+c2)				
						자활기업창업자금 (c1)		
						활성화지원금(c2)		
				수익금으로 적립(d=d1+d2+d3)				
						내일키움수익금(d1)		
						자립성과금(d2)		
						수익금사용잉여금(d3)		

수 입				지 출				비고
(매출적립금 · 수익금) 이월액 및 수입총계(9)				(매출적립금 · 수익금) 지출액 및 잔액총계(f)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이월액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자활기업창업자금	이월액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활성화지원금	이월액			활성화지원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이월액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자립성과금	이월액			자립성과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수익금사용잉여금	이월액			수익금사용잉여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1) **참여자 수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참여 50명, 10개월 참여 30명, 6개월 참여 10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50명 × 12/12월 + 30명 ×10/12월 + 10명× 6/12월 = 80명)

2) **각종 수당** : 실비, 전담관리자 수당 (기술 · 자격자 수당은 급여액에 포함)

2-2 ’○○년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전체 수입·지출 현황

※ 전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의 수입·지출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6)+(8)+(9)				총계 (⑫+e+f)				
총사업지원(6)=(4)+(5)				총사업비(⑫=④+⑩+⑪)				
정부 지원(5)	소계(3=1+2)			총사업비 ⑫	인건비 ④	소계 (④=①+②+③)		
	국비(1)					급여액①		
	지방비 (2)	소계(2)				각종수당②		
						사회보험료③		
		시도비			사업비 ⑩	소계(⑩=⑤+⑥+⑦+⑧+⑨)		
		시군구비				직접사업비⑤		
						시설·장비 임대료⑥		
						공과금⑦		
기타(4)	추가지원					업무추진비⑧		
						기타⑨		
					기타⑪	집행 잔액		
당해년(‘○○년)매출액(8)				매출총지출(e=a+b+c+d)				
				매출액 지출(a=a1+a2)				
						직접사업비(a1)		
						초과.휴일근무 수당(a2)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b)				
				매출적립금으로 사용 (c=c1+c2)				
						자활기업창업자금 (c1)		
						활성화지원금(c2)		
				수익금으로 적립(d=d1+d2+d3)				
						내일키움수익금(d1)		
						자립성과금(d2)		
						수익금사용잉여금(d3)		
(매출적립금 · 수익금) 이월액 및 수입총계(9)				(매출적립금 · 수익금) 지출액 및 잔액총계(f)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이월액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출액		

수 입				지 출				비고
		적립액				잔액		
		소계						
	자활기업창업자금	이월액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활성화지원금	이월액			활성화지원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이월액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자립성과금	이월액			자립성과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수익금사용잉여금	이월액			수익금사용잉여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1) **참여자 수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참여 50명, 10개월 참여 30명, 6개월 참여 10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50명 × 12/12월 + 30명 ×10/12월 + 10명× 6/12월 = 80명)

2) **각종 수당** : 실비, 전담관리자 수당 (기술・자격자 수당은 급여액에 포함)

2-2-1 ’○○년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6)+(8)+(9)				총계 (⑫+e+f)				
총사업지원(6)=(4)+(5)				총사업비(⑫=④+⑩+⑪)				
정부 지원(5)	소계(3=1+2)			총사업비 ⑫	인건비 ④	소계 (④=①+②+③)		
	국비(1)					급여액①		
	지방비 (2)	소계(2)				각종수당②		
						사회보험료③		
		시도비			사업비 ⑩	소계(⑩=⑤+⑥+⑦+⑧+⑨)		
		시군구비				직접사업비⑤		
						시설·장비 임대료⑥		
						공과금⑦		
기타(4)	추가지원					업무추진비⑧		
						기타⑨		
					기타⑪	집행 잔액		
당해년(‘○○년)매출액(8)				매출총지출(e=a+b+c+d)				
				매출액 지출(a=a1+a2)				
						직접사업비(a1)		
						초과.휴일근무 수당(a2)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b)				
				매출적립금으로 사용 (c=c1+c2)				
						자활기업창업자금 (c1)		
						활성화지원금(c2)		
				수익금으로 적립(d=d1+d2+d3)				
						내일키움수익금(d1)		
						자립성과금(d2)		
						수익금사용잉여금(d3)		
(매출적립금 · 수익금) 이월액 및 수입총계(9)				(매출적립금 · 수익금) 지출액 및 잔액총계(f)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이월액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자활기업창업자금	이월액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활성화지원금	이월액			활성화지원금	지출액		

수 입				지 출				비고
		적립액				잔액		
		소계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이월액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자립성과금	이월액			자립성과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수익금사용잉여금	이월액			수익금사용잉여금	지출액		
		적립액				잔액		
		소계						

1) **참여자 수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참여 50명, 10개월 참여 30명, 6개월 참여 10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50명 × 12/12월 + 30명 ×10/12월 + 10명× 6/12월 = 80명)

2) **각종 수당** : 실비, 전담관리자 수당 (기술・자격자 수당은 급여액에 포함)

3 ’○○년 Gateway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T=G+E+M)				총계 (T=B+M)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C+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총사업비 (B)	인건비 (W)	소계 (W=W1+W2+W3)		
	국비(G1)					급여액(W1)		
	지방비 (G2)	소계(G2)				각종수당(W2)		
						사회보험료(W3)		
		사도비			사업비 (C)	소계(C=C1+C2+C3+C4+C5)		
		시군구비				교육훈련 장소 임대료(C1)		
						공과금(C2)		
기타 (E)	추가지원 등					교육훈련비(C3)		
						업무추진비(C4)		
						기타(C5)		
					기타(K)	집행 잔액		

※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은 사업단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을 할 수 없고, 사업단 운영에 따른 매출액도 발생할 수 없음

※ 잘못된 사업 운영으로 수입에 매출액이 발생하거나 차량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수입·지출의 ‘기타’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하단에 지출 내역을 설명

1) 참여자 수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3개월 기준)

(예 : 3개월 참여 10명, 2개월 참여 5명, 1개월 참여 5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0명 × 3/3월 + 5명 ×2/3월 + 5명× 1/3월 = 15명)

4 ’○○년 자활기업지원 수입지출 현황

※ 자활근로예산에서 자활기업에 지원한 인건비 내역 기재

- 매출적립금(자활공동체 초기창업자금)은 해당되지 않음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4">수 입</th><th colspan="3">지 출</th><th>비고</th></tr>
<tr><td colspan="3">총사업지원(G+E)</td><td></td><td colspan="2">총사업비(B=W+K)</td><td></td><td rowspan="8"></td></tr>
<tr><td rowspan="5">정부
지원
(G)</td><td colspan="2">소계(G=G1+G2)</td><td></td><td rowspan="7">총
사업비
(B)</td><td rowspan="4">한시적
인건비
(W)</td><td rowspan="4"></td></tr>
<tr><td colspan="2">국비(G1)</td><td></td></tr>
<tr><td rowspan="3">지방비
(G2)</td><td>소계(G2)</td><td></td></tr>
<tr><td>시도비</td><td></td></tr>
<tr><td>시군구비</td><td></td><td rowspan="3">기타(K)</td><td rowspan="3"></td></tr>
<tr><td>기타
(E)</td><td colspan="2">추가지원</td><td></td></tr>
</table>

1) 지원한 자활기업(공동체) 수 : 개

2) 인건비 지원 사람 수 : 명

5 ’○○년 자활사례관리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3">수 입</th><th colspan="4">지 출</th><th>비고</th></tr>
<tr><td colspan="2">총사업지원(G+E)</td><td></td><td colspan="3">총사업비(B=W+K)</td><td></td><td rowspan="8"></td></tr>
<tr><td rowspan="5">정부
지원
(G)</td><td colspan="2">소계(G=G1+G2)</td><td></td><td rowspan="7">총사업비
(B)</td><td rowspan="6">인건비
(W)</td><td>소계 (W=W1+W2+W3)</td><td></td></tr>
<tr><td colspan="2">국비(G1)</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지방비
(G2)</td><td>소계(G2)</td><td></td><td>급여액(W1)</td><td></td></tr>
<tr><td>시도비</td><td></td><td>각종수당(W2)</td><td></td></tr>
<tr><td>시군구비</td><td></td><td>사회보험료(W3)</td><td></td></tr>
<tr><td rowspan="2">기타
(E)</td><td colspan="2" rowspan="2">추가지원</td><td rowspan="2"></td><td>기타(K)</td><td>집행 잔액</td><td></td><td></td></tr>
</table>

1) 자활사례관리자 수 :　　명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사례관리자가 10개월 근무시 자활사례관리자수를 0.83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0/12월 × 1명 = 0.83명)

5 '13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전체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4">수 입</th><th colspan="4">지 출</th><th>비고</th></tr>
<tr><td colspan="3">총사업지원(G+E)</td><td></td><td colspan="3">총사업비(B=W+C+K)</td><td></td><td rowspan="16"></td></tr>
<tr><td rowspan="6">정부 지원 (G)</td><td colspan="2">소계(G=G1+G2)</td><td></td><td rowspan="14">총사업비 (B)</td><td rowspan="4">도우미 인건비 (W)</td><td>소계 (W=W1+W2+W3)</td><td></td></tr>
<tr><td colspan="2">국비(G1)</td><td></td><td>급여액(W1)</td><td></td></tr>
<tr><td rowspan="3">지방비 (G2)</td><td>소계(G2)</td><td></td><td>각종수당(W2)</td><td></td></tr>
<tr><td rowspan="2">시도비</td><td rowspan="2"></td><td>사회보험료(W3)</td><td></td></tr>
<tr><td rowspan="9">사업비 (C)</td><td>소계(C=C1+C2+C3+C4+C5+C6)</td><td></td></tr>
<tr><td>시군구비</td><td></td><td>행정직원 인건비(C1)</td><td></td></tr>
<tr><td rowspan="5">기타 (E)</td><td colspan="2">계</td><td></td><td>시설·장비·차량 구입 및 임대료(C2)</td><td></td></tr>
<tr><td colspan="2">전년도 수익금 이월액</td><td></td><td>공과금(C3)</td><td></td></tr>
<tr><td colspan="2">수혜자 부담액</td><td></td><td>교육·훈련비(C4)</td><td></td></tr>
<tr><td colspan="2">추가지원</td><td></td><td>업무추진비(C5)</td><td></td></tr>
<tr><td></td><td></td><td>기타(C6)</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기타(K)</td><td>집행잔액(수익금) 등</td><td></td></tr>
</table>

1) 도우미 수 : 명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12개월 근무 5명, 6개월 근무 1명이 있을 경우 도우미수를 5.5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2/12월 × 5명 + 6/12월 × 1명 = 5.5명)

5-1 '13년 가사간병서비스 바우처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C+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총사업비 (B)	도우미 인건비 (W)	소계 (W=W1+W2+W3)		
	국비(G1)					급여액(W1)		
	지방비 (G2)	소계(G2)				각종수당(W2)		
						사회보험료(W3)		
		시도비			사업비 (C)	소계(C=C1+C2+C3+C4+C5+C6)		
		시군구비				행정직원 인건비(C1)		
기타 (E)	계					시설·장비·차량 구입 및 임대료(C2)		
						공과금(C3)		
	전년도 수익금 이월액					교육·훈련비(C4)		
	수혜자 부담액					업무추진비(C5)		
						기타(C6)		
	추가지원				기타(K)	집행잔액(수익금) 등		

1) 도우미 수 : 명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12개월 근무 5명, 6개월 근무 1명이 있을 경우 도우미수를 5.5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2/12월 × 5명 + 6/12월 × 1명 = 5.5명)

6 '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4">수 입</th><th colspan="4">지 출</th><th>비고</th></tr>
<tr><td colspan="3">총사업지원(G+E)</td><td></td><td colspan="3">총사업비(B=W+C+K)</td><td></td><td rowspan="15"></td></tr>
<tr><td rowspan="7">정부 지원 (G)</td><td colspan="2">소계(G=G1+G2)</td><td></td><td rowspan="12">총사업비 (B)</td><td rowspan="4">도우미 인건비 (W)</td><td>소계 (W=W1+W2+W3)</td><td></td></tr>
<tr><td colspan="2">국비(G1)</td><td></td><td>급여액(W1)</td><td></td></tr>
<tr><td rowspan="3">지방비 (G2)</td><td>소계(G2)</td><td></td><td>각종수당(W2)</td><td></td></tr>
<tr><td></td><td></td><td>사회보험료(W3)</td><td></td></tr>
<tr><td>시도비</td><td></td><td rowspan="8">사업비 (C)</td><td>소계(C=C1+C2+C3+C4+C5+C6)</td><td></td></tr>
<tr><td>시군구비</td><td></td><td>행정직원 인건비(C1)</td><td></td></tr>
<tr><td rowspan="5">기타 (E)</td><td colspan="2">계</td><td></td><td>시설·장비·차량 구입 및 임대료(C2)</td><td></td></tr>
<tr><td colspan="2">전년도 수익금 이월액</td><td></td><td>공과금(C3)</td><td></td></tr>
<tr><td colspan="2">수혜자 부담액</td><td></td><td>교육·훈련비(C4)</td><td></td></tr>
<tr><td colspan="2">추가지원</td><td></td><td>업무추진비(C5)</td><td></td></tr>
<tr><td></td><td></td><td>기타(C6)</td><td></td></tr>
<tr><td></td><td></td><td>기타(K)</td><td>집행잔액(수익금) 등</td><td></td></tr>
</table>

1) 도우미 수 : 명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12개월 근무 5명, 6개월 근무 1명이 있을 경우 도우미수를 5.5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2/12월 × 5명 + 6/12월 × 1명 = 5.5명)

7 '13년 기타 사업 전체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4">수 입</th><th colspan="4">지 출</th><th>비고</th></tr>
<tr><td colspan="3">총사업지원(G+E)</td><td></td><td colspan="3">총사업비(B=W+C+K)</td><td></td><td rowspan="17"></td></tr>
<tr><td rowspan="5">정부 지원 (G)</td><td colspan="2">소계(G=G1+G2)</td><td></td><td rowspan="14">총사업비 (B)</td><td rowspan="4">도우미 인건비 (W)</td><td colspan="2">소계 (W=W1+W2+W3)</td><td></td></tr>
<tr><td colspan="2">국비(G1)</td><td></td><td colspan="2">급여액(W1)</td><td></td></tr>
<tr><td rowspan="3">지방비 (G2)</td><td>소계(G2)</td><td></td><td colspan="2">각종수당(W2)</td><td></td></tr>
<tr><td colspan="2">사회보험료(W3)</td><td></td></tr>
<tr><td>시도비</td><td></td><td rowspan="9">사업비 (C)</td><td colspan="2">소계(C=C1+C2+C3+C4+C5+C6)</td><td></td></tr>
<tr><td rowspan="4">기타 (E)</td><td>시군구비</td><td></td><td colspan="2">행정직원 인건비(C1)</td><td></td></tr>
<tr><td colspan="2">계</td><td></td><td colspan="2">시설·장비·차량 구입 및 임대료(C2)</td><td></td></tr>
<tr><td colspan="2">전년도 수익금 이월액</td><td></td><td colspan="2">공과금(C3)</td><td></td></tr>
<tr><td colspan="2">수혜자 부담액</td><td></td><td colspan="2">교육·훈련비(C4)</td><td></td></tr>
<tr><td colspan="2">추가지원</td><td></td><td colspan="2">업무추진비(C5)</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기타(C6)</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기타(K)</td><td>집행잔액(수익금) 등</td><td></td></tr>
</table>

1) ○○사업 종사자 수 : 명

※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0개월 근무시 종사자 수를 0.83명으로 기재)

7-1 ’○○년 ○○사업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4">수 입</th><th colspan="4">지 출</th><th>비고</th></tr>
<tr><td colspan="3">총사업지원(G+E)</td><td></td><td colspan="3">총사업비(B=W+C+K)</td><td></td><td rowspan="17"></td></tr>
<tr><td rowspan="7">정부 지원 (G)</td><td colspan="2">소계(G=G1+G2)</td><td></td><td rowspan="14">총사업비 (B)</td><td rowspan="4">도우미 인건비 (W)</td><td colspan="2">소계 (W=W1+W2+W3)</td><td></td></tr>
<tr><td colspan="2">국비(G1)</td><td></td><td colspan="2">급여액(W1)</td><td></td></tr>
<tr><td rowspan="3">지방비 (G2)</td><td>소계(G2)</td><td></td><td colspan="2">각종수당(W2)</td><td></td></tr>
<tr><td colspan="2">사회보험료(W3)</td><td></td></tr>
<tr><td>시도비</td><td></td><td rowspan="9">사업비 (C)</td><td colspan="2">소계(C=C1+C2+C3+C4+C5+C6)</td><td></td></tr>
<tr><td>시군구비</td><td></td><td colspan="2">행정직원 인건비(C1)</td><td></td></tr>
<tr><td rowspan="5">기타 (E)</td><td colspan="2">계</td><td></td><td colspan="2">시설·장비·차량 구입 및 임대료(C2)</td><td></td></tr>
<tr><td colspan="2">전년도 수익금 이월액</td><td></td><td colspan="2">공과금(C3)</td><td></td></tr>
<tr><td colspan="2">수혜자 부담액</td><td></td><td colspan="2">교육·훈련비(C4)</td><td></td></tr>
<tr><td colspan="2">추가지원</td><td></td><td colspan="2">업무추진비(C5)</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기타(C6)</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기타(K)</td><td colspan="2">집행잔액(수익금) 등</td><td></td></tr>
</table>

1) ○○사업 종사자 수 : 명

※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0개월 근무시 종사자 수를 0.83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0/12월 × 1명 = 0.83명)

III. 자산 현황

총괄	'○○년 센터 자산 총괄

연번	자산 종류	소유자명	수량(or 면적)	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					

※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센터, 센터장 명의의 자산은 모두 기재

※ 자산종류 : 부동산(토지, 건물), 전세자금 등 임대료, 차량 등

1 '○○년 차량 현황

연번	차종	소유자명	평가금액	사용 용도	비고
1					
2					
3					
4					
5					
6					
.....					

1-1 전년 대비 증가한 차량

연번	차종	소유자명	평가금액	사용 용도	비고
1					
2					
3					

1-2 전년 대비 감소한 차량

연번	차종	소유자명	평가금액	사용 용도	비고
1					
2					
3					

2 '○○년 현금성 유동자산 현황

※ 센터 사무실 및 사업장 임대를 위한 전세자금 등

연번	유동자산 용도	소유(계약)자명	금 액	비고
1				
2				
3				
4				
5				
6				
.....				

2-1 전년 대비 증가한 현금성 유동자산

연번	유동자산 용도	소유(계약)자명	평가금액	비고
1				
2				
3				

2-2 전년 대비 감소한 현금성 유동자산

연번	유동자산 용도	소유(계약)자명	평가금액	비고
1				
2				
3				

3 '○○년 부동산 현황

연번	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명	평가액	용도	비고
1							
2							
3							
4							
5							
6							
.....							

3-1 전년 대비 증가한 부동산

연번	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명	평가액	용도	비고
1							
2							
3							

3-2 전년 대비 감소한 부동산

연번	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명	평가액	용도	비고
1							
2							
3							

8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Q/A

※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참여대상 인정기준

Q: Gateway참여자의 최소이행기간은(1달 미만 참여자도 참여자로 인정해 줄 것 인지)?

A: Gateway 참여자의 경우 30일이상 참여자를 기준으로 함

Q: 최저임금기준과 관련하여 4대보험 및 퇴직금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

A: 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Q: Gateway과정에 참여 하였다가 본 사업단으로 옮긴 참여주민이 게이트웨이 참여기간 중에 받은 교육은 참여자 교육이수에 포함되는지?

A: Gateway참여자는 자활성과(취·창업률, 탈수급률, 3개월·6개월 취업유지율)에서만 포함되며, 따라서 Gateway과정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Q: Gateway과정 참여자의 사업단 배정을 위해 이루어진 사례회의는 사례관리 개최율에 포함되는지 ?

A: 본래 Gateway참여자는 사례회의 지표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립지원계획(ISP)수립 이후 사업단 배치를 위해 이루어진 대상자 사례회의만 인정함.(사례회의 일지에 사업단 배치를 위해 이루어진 사례회의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Q: 2012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의 경우 2013년 1월 31일까지 자활성과(취·창업률, 탈수급률)로 인정해주었는데 올해 2013년도 평가를 할 때에 2014년 1월 자활성공자(취 · 창업, 탈수급률)는 인정 되는 것 인지?

A: 1년+1개월로 추가로 정리되어 성과로 인정 될 수 있음. 즉, 2014년 1월 31까지 인정됨

Ⅰ. 공통지표

□ 자활성과

Q: 자활성공률 관련하여 자활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의 최대 인정 가능한 기준은 언제까지인지?

A: 2014년 1월 31일

□ 사업단 운영

Q: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최소입력인원이 있는지?

A: 최소 입력인원을 5명 기준으로 함

※ 다만, 사업단이용자가 5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단에서 추가로 이용자를 입력하여도 됨

예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한 사회서비스 사업단이 총 4개일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입력최소인원은? – 4개의 사업단 * 5명 =20명의 총원을 입력하여야 함.

Q: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중 매출을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단(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농어촌 지역자활센터 정부양곡배송, 시군구가 결정하여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단)의 경우 수익금과 매출액평가를 진행 할 것인지?

A: 수익금 매출액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재무회계작성에는 모두 포함됨

Q: 인적자본향상지원 지표 중 전문 · 민간 자격증의 기준은 ?

A: 전문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에 등록된 자격증으로 한정하며, 민간자격증의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www.pq.or.kr)에 공인되거나 등록된 자격증을 인정함

Q: 인적자본향상지원 지표에서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 및 학위를 취득 경우 이것을 인정할 것인지?

A: 1인이 총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은 각 분야별(전문1개, 민간1개)로 2개로 한정지어짐. 학위 또한 1개로 한정지어짐

□ 자활기업

Q: 자활기업 참여자의 급여액의 기준은?

A: 퇴직금까지 포함된 금액임

□ 참여자관리

Q: 작년의 경우 직무교육에서 '협동조합기본법'과 같은 사업기준안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협동조합 운영 사례'에 대한 소개나 교육은 인정이 되는가?

A: 향후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단(시장진입형 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으로 세부적인절차 및 준비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한 교육은 인정함

* 외부강사자격기준: 증빙서류로 협동조합관련전문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경험이 있는자) 프로필 첨부

Q: 직무교육의 경우 해당 사업단과 관련된 교육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PC사용능력, 전산회계, 미디어 등과 같이 취업이나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련이 있는 교육은 해당이 되는 것인지?

A: 인정

* 단, 일회성으로 전체(센터) 참여자 집체교육인 경우 상세내용을 서류검토 후 제외.(직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사업단은 제외됨)

Q: 직무와 소양교육 온라인 교육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직무교육의 경우 온라인 교육은 불인정 하며, 소양교육은 50%만 인정함

Q: 온라인 교육으로 소양교육을 이수하였을 때 제한 시간이 있는 것인지?

A: 시간의 제한은 없음

□ 센터운영

Q: 종사자 직무교육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육은 인정이 되는지?

A: 인정됨. 단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이루어진 교육인지를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할 것

Q: 종사자 근속년수 관련?

A: 센터장 포함. 법정휴가(출산휴가는 근속의 연속임)는 종사자 근속년수에 포함, 대체인력 및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이 되지 않는 종사자는 센터장 도장 날인하여 서류 제출 할 것

Q: 사례관리팀 실무자도 종사자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되는가?

A: 정규직 및 센터운영비로 지원받는 직원에 한함(계약직포함)

* 사업비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은 제외

Q: 센터 규모별 정원이 모수로 되어있는데, 확대형 최대 인원7명 중 6명만 근무하는 경우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수(모수가 6명)만큼 산정되어 계산되는지?

A: 6명임

Q: '언론홍보는 다건으로 인정' 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역 정보지(교차로 등) 및 지역신문도 이에 해당하는가?

A: 지역신문만 해당되며, 지역정보지(교차로, 알림방)등은 해당되지 않음.

Q: 사업단 홍보용으로 제작한 팜플렛/리플렛/전단지의 경우 만든 날짜를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주문 및 제작과 관련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로 입증이 가능한가?

A: 입증이 가능하나, 결과보고 내부결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할 것

Q: 센터운영지표에서 휴직기간동안 교육은?(만일 연 90일 이상 종사자 중에서 휴직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람도 교육을 다 이수 해야 하는지여부)

A: 90일 이상 종사자일 경우 모두 3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II. 특성화 지표

□ 외부자원 후원

Q: 외부자원 동원지표에서 금액은 2013년도 총 후원 금액인지?

A: 2013년 총 후원금액이 500만원 기준임. 법인전입금(인건비지원)은 제외

Q: 외부자원 후원과 관련하여 2013년 후원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발행받은 서류(공문이 아님)는 인정 할 것인지?

A: 인정되나, 단 수령증이나 인수증 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Q: 자활기금 교부, 광역자활센터 컨설팅 등도 외부자원동원 관련에 해당되는가?

A: 해당 없음

□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Q: MOU체결일은 당해연도가 아니나 사업의 특성상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닌 경우 당해연도에도 실적으로 잡히는지?

A: 당해연도 실적으로 인정됨

Q: MOU체결시 협약서 상 다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이 협약서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는지?

A: 협약서상 여러단체가 참여를 하였어도 사업의 주제가 1개일 경우 1개의 건으로 인정함

Q: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지표에서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A: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내에 공모 또한 위탁받은 사업

9 첨부자료

1. 시군구별 유형현황

구분	계	도시형	도농복합	농촌형
계	230 (247)	101(126)	52(55)	77(66)
서울	25 (31)	25(31)	-	-
		강서구(3), 관악구(3), 노원구(3), 강남구(1), 강동구(1), 강북구(1), 광진구(1), 구로구(2), 금천구(1), 도봉구(1), 동대문구(1), 동작구(1), 마포구(1), 서대문구(1), 성동구(1), 성북구(1), 송파구(1), 양천구(1), 영등포구(1), 용산구(1), 은평구(1), 종로구(1), 중구(1), 중랑구(1), 서초구(0)		
부산	16 (18)	14(16)	2(2)	-
		북구(2), 사하구(2), 영도구 (1), 서구(1), 수영구(1), 중구(1), 남구(1), 동구(1), 금정구(1), 동래구(1), 연제구(1), 해운대구(1), 사상구(1), 부산진구(1)	강서구(1), 기장군(1)	
대구	8 (9)	7(8)	1(1)	-
		달서구(2), 남구(1), 서구(1), 중구(1), 동구(1), 수성구(1), 북구(1)	달성군(1)	
인천	10 (11)	8(10)	-	2(1)
		남구(2), 부평구(2), 동구(1), 연수구(1), 중구(1), 계양구(1), 서구(1), 남동구(1),		강화군(1), 옹진군(0)
광주	5 (9)	5(9)	-	-
		북구(3), 서구(2), 광산구(2), 남구(1), 동구(1)		
대전	5 (5)	5(5)	-	-
		중구(1), 동구(1), 대덕구(1), 유성구(1), 서구(1)		
울산	5 (5)	4(4)	1(1)	-
		중구(1), 동구(1), 북구(1), 남구(1)	울주군(1)	
경기	31 (32)	20(24)	8(6)	3(2)
		수원시(3), 부천시(3), 성남시(2), 시흥시(2), 안산시(2),, 광명시(1), 군포시(1), 광주시(1), 김포시(1), 남양주시(1), 의정부시(1), 파주시(1), 안양시(1), 고양시(1), 화성시(1), 오산시(1), 구리시(1), 의왕시(0), 과천시(0), 동두천시(0)	양주시(1), 포천시(1), 안성시(1), 용인시(1), 평택시(1), 하남시(1), 가평군(0), 이천시(0),	양평군(1), 여주군(1), 연천군(0)
강원	18 (16)		6(6)	12(10)
		-	삼척시(1), 속초시(1), 동해시(1), 강릉시(1), 춘천시(1), 원주시(1)	태백시(1), 화천군(1), 고성군(1), 인제군(1), 양양군(1), 횡성군(1), 영월군(1), 평창군(1), 정선군(1), 홍천군(1), 양구군(0), 철원군(0)
충북	12	1(1)	2(2)	9(9)

구분	계	도시형	도농복합	농촌형
	(12)	청주시(1)	제천시(1), 충주시(1)	증평군(1), 괴산군(1), 보은군(1), 단양군(1), 영동군(1), 옥천군(1), 진천군(1), 음성군(1), 청원군(1)
충남	16 (15)	2(2)	8(8)	6(5)
		아산시(1), 천안시(1)	보령시(1), 공주시(1), 논산시(1), 당진시(1), 서산시(1), 예산군(1), 홍성군(1), 연기군(1)	청양군(1), 태안군(1), 서천군(1), 금산군(1), 부여군(1), 계룡시(0)
전북	14 (18)	1(3)	6(8)	7(7)
		전주시(3)	군산시(2), 익산시(2), 정읍시(1), 남원시(1), 김제시(1), 완주군(1)	장수군(1), 진안군(1), 순창군(1), 임실군(1), 무주군(1), 고창군(1), 부안군(1)
전남	22 (22)	2(2)	4(5)	16(15)
		목포시(1), 순천시(1)	여수시(2), 화순군(1), 나주시(1), 광양시(1)	진도군(1), 신안군(1), 함평군(1), 강진군(1), 곡성군(1), 장흥군(1), 보성군(1), 완도군(1), 장성군(1), 담양군(1), 영광군(1), 무안군(1), 영암군(1), 고흥군(1), 해남군(1), 구례군(0)
경북	23 (20)	3(4)	8(8)	12(8)
		포항시(2), 경산시(1), 구미시(1)	문경시(1), 상주시(1), 영주시(1), 영천시(1), 김천시(1), 안동시(1), 경주시(1), 칠곡군(1)	군위군(1), 봉화군(1), 예천군(1), 청도군(1), 영덕군(1), 성주군(1), 고령군(1), 울진군(1), 의성군(0), 영양군(0), 청송군(0), 울릉군(0)
경남	18 (20)	4(7)	4(4)	10(9)
		창원시(4), 거제시(1), 김해시(1), 양산시(1)	밀양시(1), 사천시(1), 통영시(1), 진주시(1)	거창군(1), 고성군(1), 남해군(1), 산청군(1), 창녕군(1), 하동군(1), 함안군(1), 함양군(1), 합천군(1), 의령군(0)
제주	2 (4)		2(4)	-
		-	제주시(2), 서귀포시(2)	

*( )안은 지역자활센터 개소수임

2.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유형현황

구 분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비고
계	247	64	123	60	
도시형	126	(49개소) 서울(강북, 강서방화, 광진, 마포, 성동, 영등포, 은평), 부산(동구, 부산진, 사상, 연제, 해운대), 대구(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인천(부평, 부평남부, 서구), 광주(남구, 북구동신, 북구일터, 북구희망), 대전(서구, 중구), 경기(남양주, 부천나눔, 부천원미, 성남만남, 수원, 수원희망,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의정부), 충남(천안), 전북(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전남(목포, 순천), 경북(경산, 구미, 포항, 포항나눔), 경남(김해, 마산희망, 양산)	(59개소) 서울(강남, 강동, 강서, 강서등촌, 관악, 구로삶터, 금천,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 서대문, 성북, 송파, 중랑유린), 부산(금정, 남구, 동래, 북구, 북구희망터, 사하, 사하두송, 서구, 수영, 영도), 대구(달서, 중구, 달서행복), 인천(계양, 남구, 남동구, 연수, 중구), 광주(광산, 서구, 서구상무), 대전(대덕, 동구), 울산(남구, 동구, 중구), 경기(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소사, 성남, 수원우만, 안산양지, 안양, 파주, 화성), 충북(청주), 충남(아산), 경남(거제, 마산, 진해, 창원)	(18개소) 서울(관악봉천, 관악일터,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양천, 용산, 종로, 중구), 부산(중구),인천(남구미추홀, 동구), 광주(동구, 광산어등), 대전(유성), 울산(북구), 경기(오산)	
도농 복합형	55	(14개소) 대구(달성), 강원(강릉, 원주, 춘천), 충북(제천, 충주), 충남(연기), 전북(김제), 전남(광양, 여수),경남(진주),경북(경주, 안동), 제주(제주수눌음)	(33개소) 부산(기장), 울산(울주), 경기(양주, 용인, 평택, 포천), 강원(동해, 삼척, 속초반야), 충남(공주, 당진, 보령, 홍성), 전북(군산, 군산한마음, 남원, 완주, 익산, 익산원광, 정읍), 전남(나주, 여수시민, 화순), 경북(김천, 문경, 상주, 영주, 영천, 칠곡),경남(밀양, 사천) 제주(제주이어도, 서귀포일터나눔)	(8개소) 부산(강서), 경기(안성맞춤, 하남), 충남(논산, 서산, 예산), 경남(통영), 제주(서귀포오름)	
농촌형	66	(1개소) 충남(금산)	(31개소) 경기(여주), 강원(고성, 정선, 태백, 횡성), 충북(괴산, 단양, 보은, 옥천, 음성, 진천, 청원), 충남(서천), 전북(고창, 부안), 전남(강진, 곡성, 보성,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경북(성주, 영덕, 울진), 경남(거창, 고성, 창녕, 하동, 합천)	(34개소) 인천(강화), 경기(양평), 강원(양양, 영월, 인제, 평창, 화천, 홍천), 충북(영동, 증평), 충남(부여, 청양, 태안), 전북(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전남(고흥, 담양, 무안, 신안, 완도, 진도, 함평), 경북(고령, 군위, 봉화, 예천, 청도), 경남(남해, 산청, 함안, 함양),	

3.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내부 외부강사 기준

항 목	기 준
1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현직 대학총장(급) – 대기업 총수(회장) – 국영기업체 사장 – 인간문화재
2급	– 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 예술인 · 종교인 및 언론인 – 기업·기관 · 단체의 임원 및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 산업훈련 레크레이션 전문가(5년이상 경력자) – 연구기관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 3급 이상 공무원
가급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6급이하 중앙부처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강사 나다급 제외자
나급	– 6급 이하 공무원 – 전산 및 외국어분야 외래강사, 외국어 학원강사
다급	– 각종 실가·실습 보조강사
기타	– 교육내용 관련 분야 종사경력 3년 이상자

4. 참여자 및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제외 예시

1) 참여자 법정 의무교육 제외 예시

구분	세부 내용
1. 지자체 보조사업자 의무교육	① 지자체 사회복지 법인 실무자교육 ② 참여주민 보수교육 ③ 보조금 사용에 대한 교육 ④ 기타 직무내용와 관련 없는 지자체 의무교육
2. 조직 관리 참여자 의무교육	① 성희롱 교육 ② 보건관련 의료 교육 ③ 소방안전 특별 교육(가스안전교육, 기타 안전교육 등) ④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에 관한 교육 ⑤ 직장내 안전관리 교육(감염 및 에이즈 등)

2)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제외 예시

구분	세부 내용
1. 지자체 보조사업자 의무교육	① 지자체 사회복지 법인 실무자교육 ② 보조금 사용에 대한 교육 ③ 기타 직무내용와 관련 없는 지자체 의무교육
2. 조직 관리 참여자 의무교육	① 성희롱 교육 ② 보건관련 의료 교육 ③ 소방안전 특별 교육(가스안전교육, 기타 안전교육 등) ④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에 관한 교육 ⑤ 직장내 안전관리 교육(감염 및 에이즈 등) ⑥ 방역교육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2013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항목 안내

<참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 연계범위

평가지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	관련메뉴
공통지표	① 자활 성과	자활 성공률	일반기업, 정부재정투입일자리, 자활기업 취·창업	X	의견수렴
			탈수급률	X	의견수렴
		취업 유지율	3개월 유지율	X	의견수렴
			6개월 유지율	X	의견수렴
	② 사업단 운영	시장 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O	「수입결의서」
			1인당 월평균 매출액	O	「수입결의서」
		사회 서비스 형 사업단	만족도 조사	O	「서비스수혜자」
			1인당 연평균 수익금	O	「수입결의서」
			1인당 월평균 매출액	O	「수입결의서」
		참여자 인적자본향상 지원	전문자격증 취득비율	X	
			민간자격증 취득비율	X	
			상위학력 취득비율	X	
	③ 자활 기업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O	「근무기록적용정산(공동체)」
		자활기업 수급자 비율		O	「참여자배정」
	④ 참여자 관리	직무교육 이수율		O	「프로그램계획서」 ※프로그램유형 ・직무교육 : 교육 ・소양교육 : 워크샵, 기타 ・사례회의 : 회의
		소양교육 이수율		O	
		사례회의 개최율		O	
	⑤ 센터 운영	종사자 1인당 직무교육 이수율		O	「프로그램계획서」 ※프로그램유형 : 교육
		기관 및 사업 관련 홍보 건수		X	
		종사자 근속년수		O	「인사카드관리」
		재무 회계 투명성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X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X	
특성화지표	⑥외부자원 후원		외부기관 후원연계 건수	O	「외부자원동원현황」
	⑦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지자체 위탁사업(중앙정부사업 제외) 건수	X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X	
	⑧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자활사업 미참여자 지역일자리 성공률	X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	X	

1. 공통

(1) 참여자등록

○ [이력정보] 〉 [참여자관리] 〉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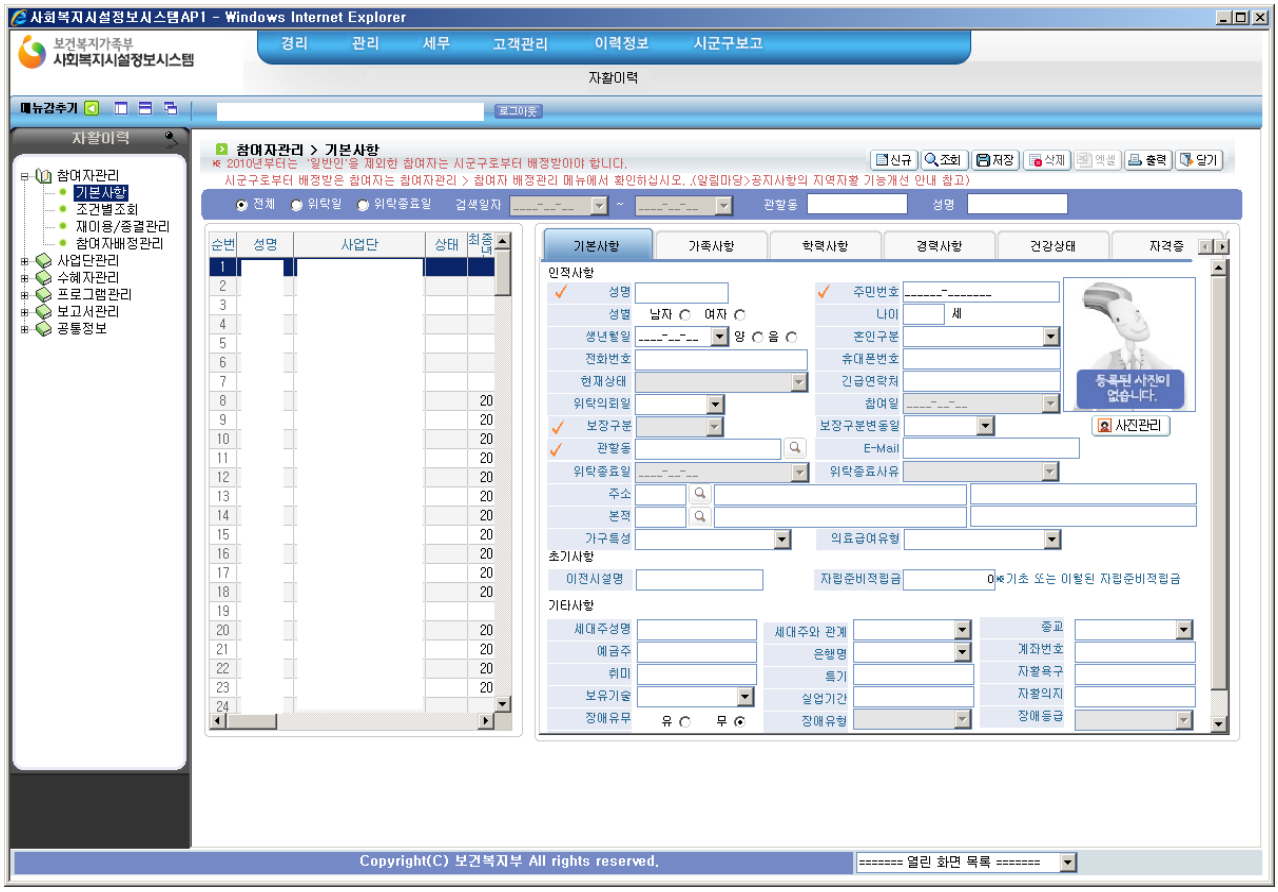

- 참여자의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탁의뢰일, 참여일, 보장구분

1. 공통

(2) 사업단등록

○ [이력정보] 〉 [사업단관리] 〉 [사업단정보]

- 사업단의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사업년도, 사업단명, 사업종류, 사업단유형

  ※ 사업단유형이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일 경우 광역자활공동체여부, 인정일 필수입력

1. 공통

(3) 사업단배정

○ [이력정보] 〉 [사업단관리] 〉 [사업단배정]

- 참여자를 사업단별로 배정합니다.

1. 공통

(4) 사업단 참여자 급여내역

○ [이력정보] 〉 [사업단관리] 〉 [근무기록적용정산]

- 사업단 참여자별 급여내역을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총지급액

1. 공통

(5) 자활기업 참여자 급여내역

○ [이력정보] 〉 [사업단관리] 〉 [근무기록적용정산(공동체)]

- 자활기업 참여자의 급여내역을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총지급액, 한시적인건비

2. 사업단운영

(1)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① 1인당 월평균 매출액

○ [경리]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관리] 〉 [결의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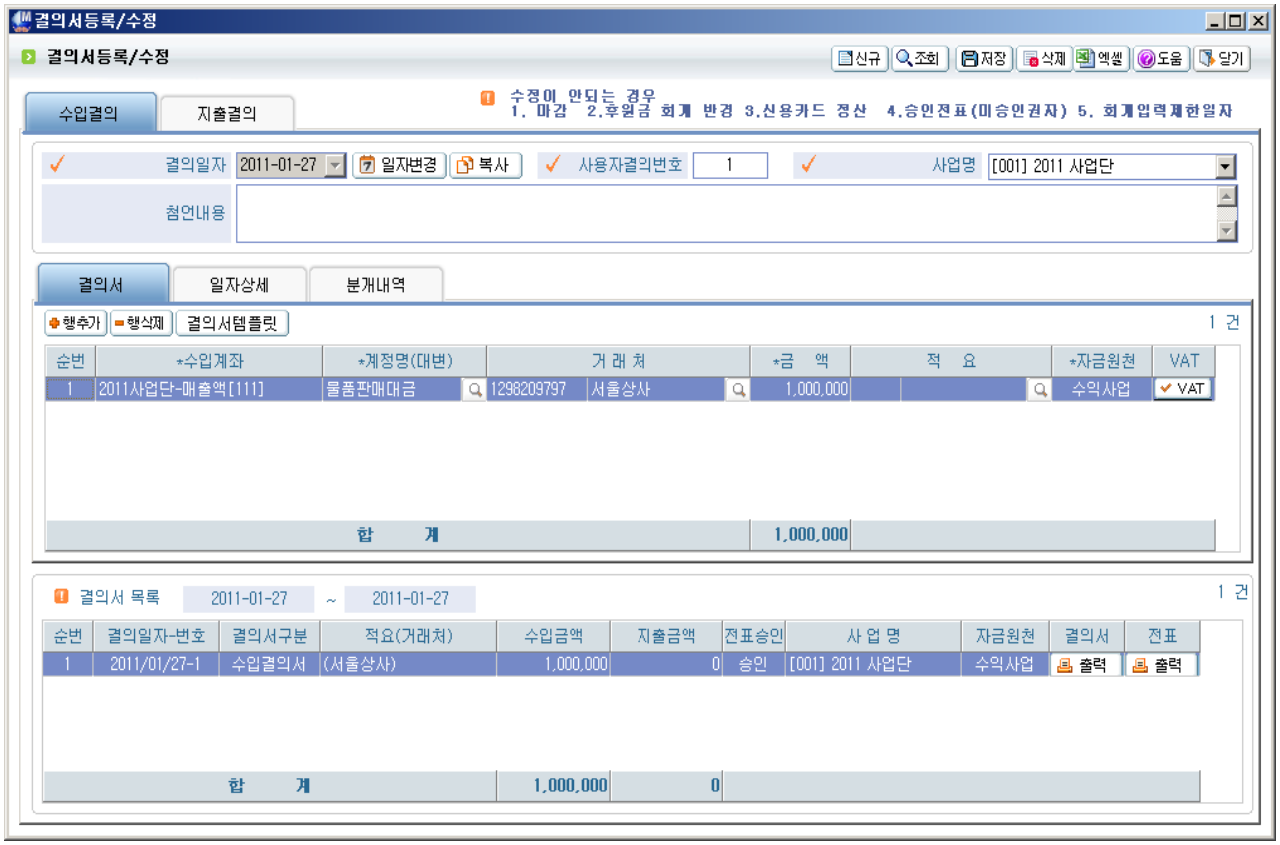

- 사업단별 매출액을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수입계좌, 계정명, 금액

2. 사업단운영

(1)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② 1인당 연평균 수익금

○ [경리]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관리] 〉 [결의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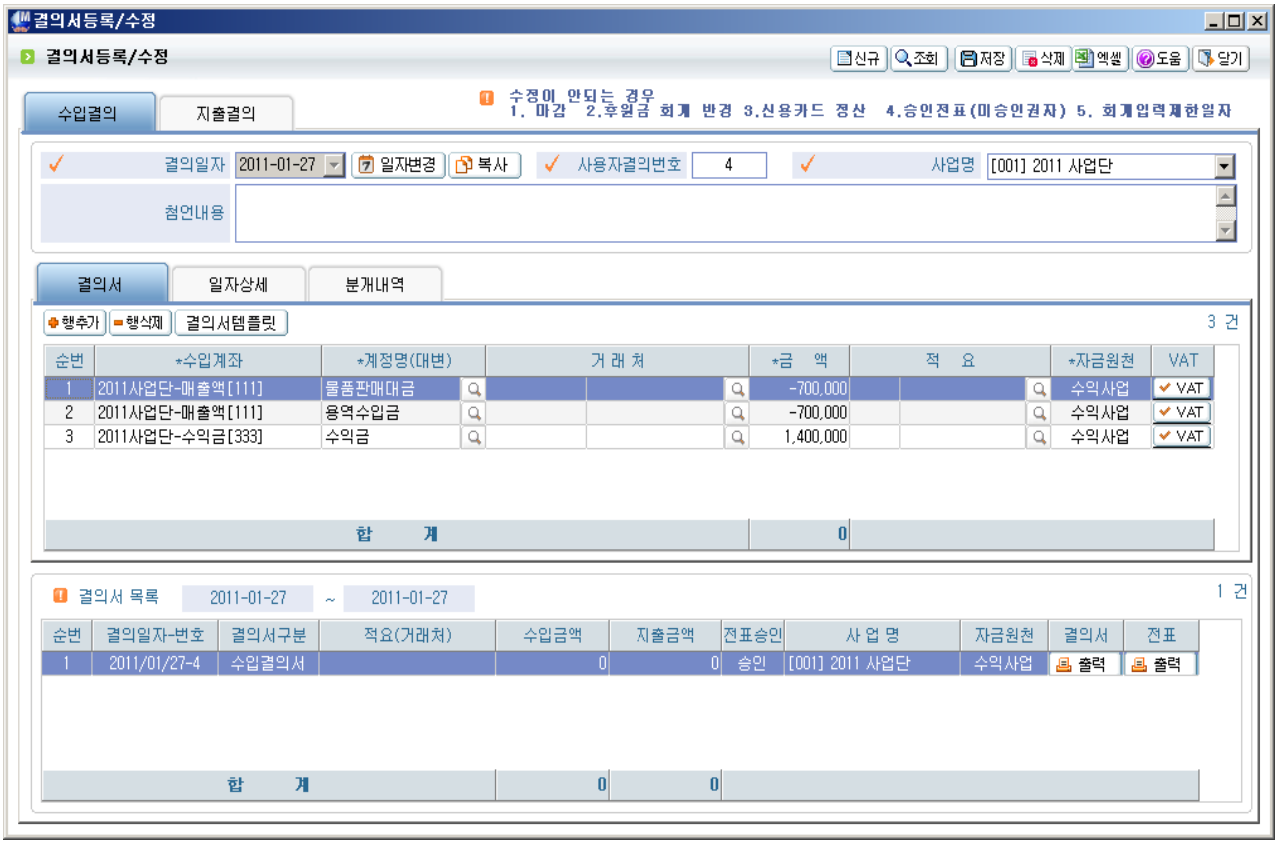

- 사업단별 수익금을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수입계좌, 계정명, 금액

2. 사업단운영

(2)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① 만족도 조사(1/2)

○ [이력정보] 〉 [수혜자관리] 〉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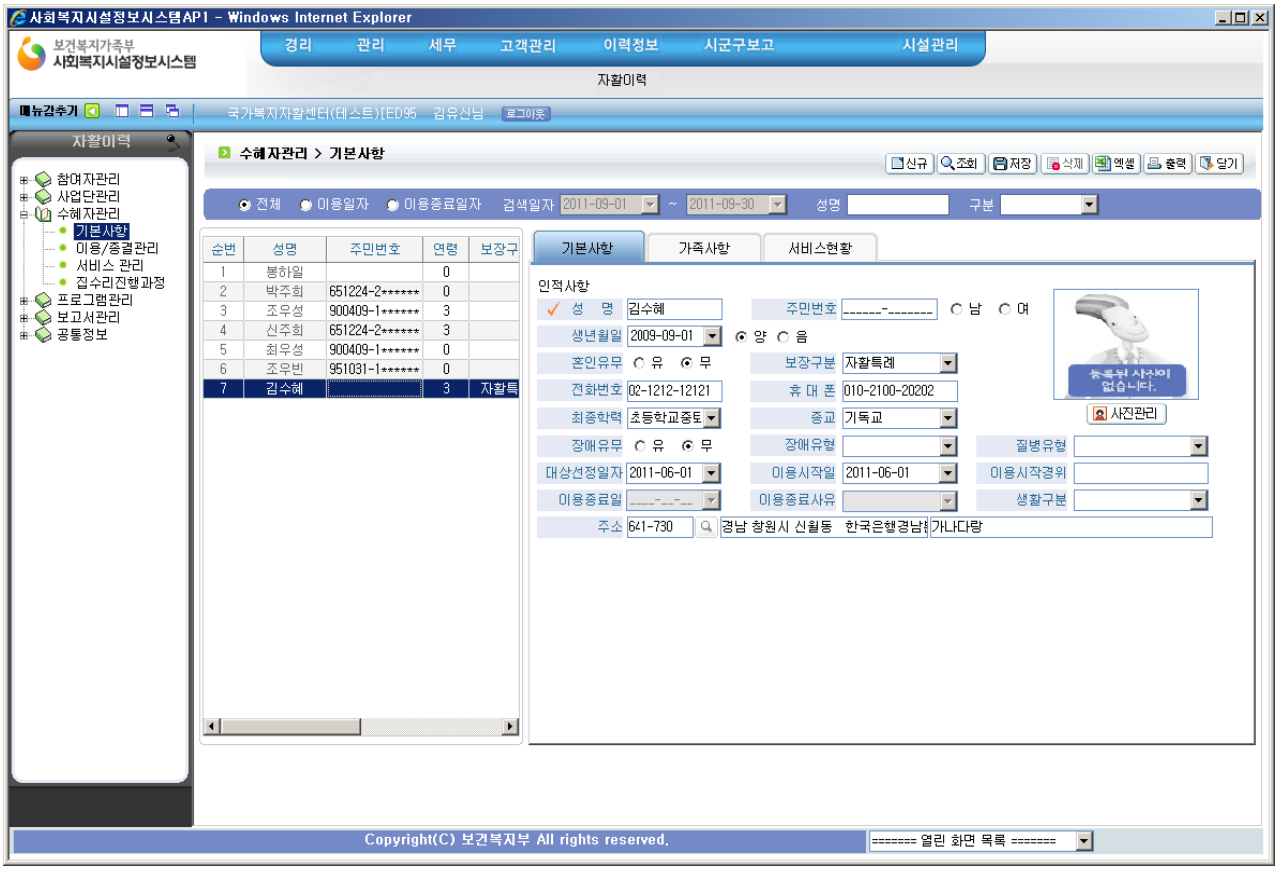

- 서비스 수혜자의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또는 전화번호), 이용시작일

  ※서비스 수혜자가 기관(업체)일 경우 성명(기관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입력

2. 사업단운영

(2)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① 만족도 조사(2/2)

○ [이력정보] 〉 [수혜자관리] 〉 [서비스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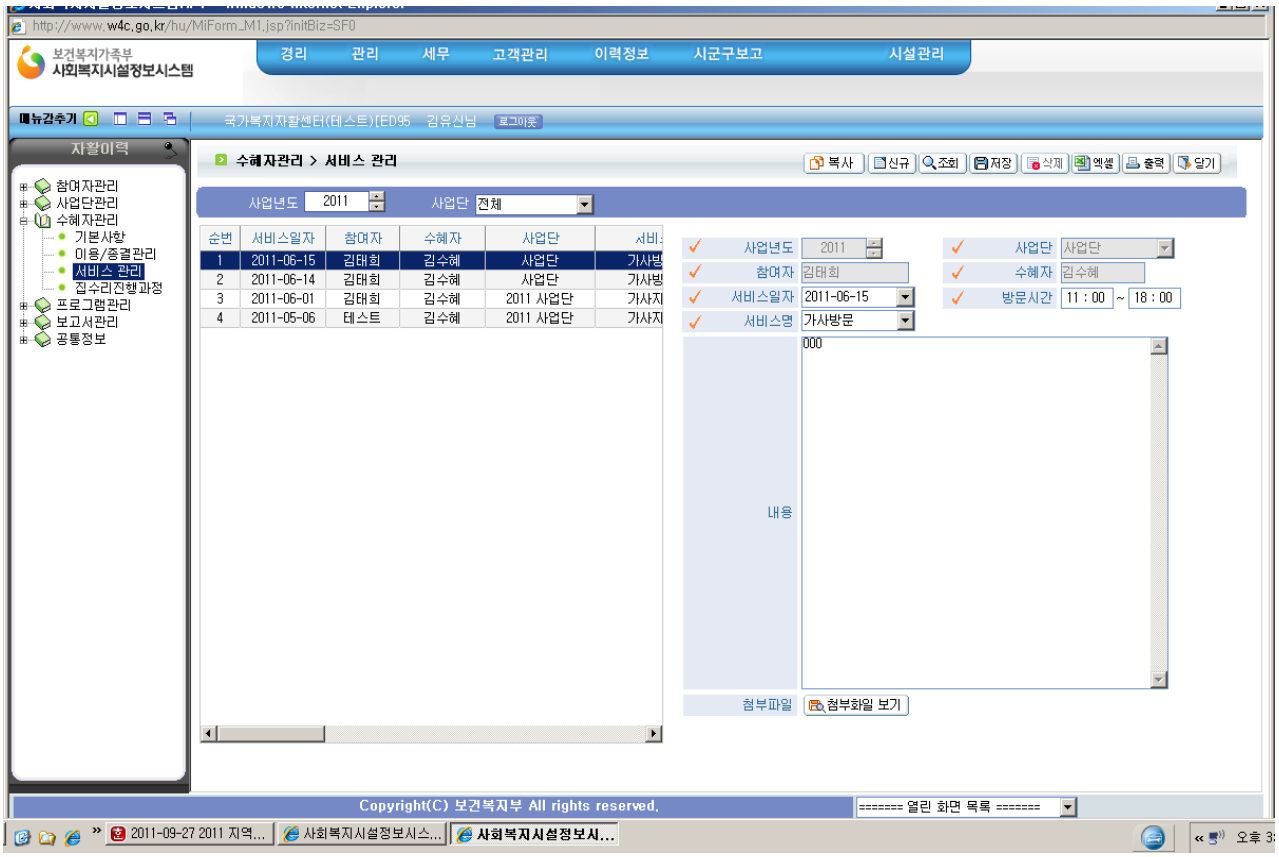

- 서비스 수혜자별 수혜이력을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사업년도, 사업단, 수혜자, 서비스일자, 서비스명

3. 참여자 관리

(1) 직무교육 · 소양교육 · 사례회의 이수율

○ [이력정보] 〉 [프로그램관리] 〉 [프로그램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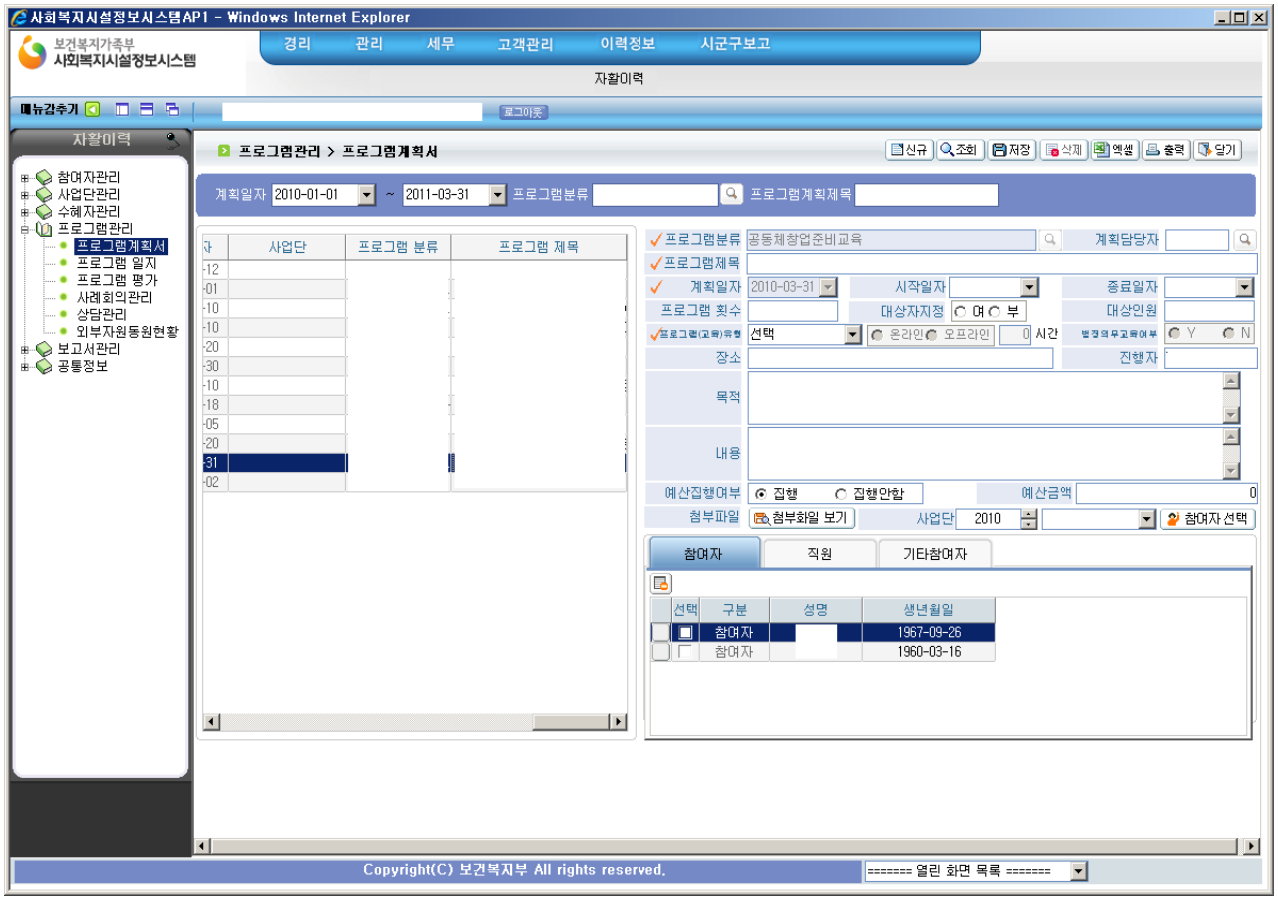

-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력을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프로그램분류, 프로그램제목, 계획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프로그램(교육)유형, 온/오프라인, 시간, 법정의무교육여부, 참여자
- 프로그램유형 : 직무교육→교육, 소양교육→워크샵·기타, 사례회의→회의

4. 센터운영

(1) 종사자 1인당 직무교육 이수율(1/2)

○ [관리] 〉 [인사관리] 〉 [인사카드관리]

- 종사자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이름, 시설입사일, 퇴사일(퇴사했을 경우), 급여지급기준

※ 급여지급기준

· 인건비 : 급여를 “인건비”로 지급할 경우

· 사업비 : 급여를 “사업비”로 지급할 경우

4. 센터운영

(1) 종사자 1인당 직무교육 이수율(2/2)

○ [이력정보] 〉 [프로그램관리] 〉 [프로그램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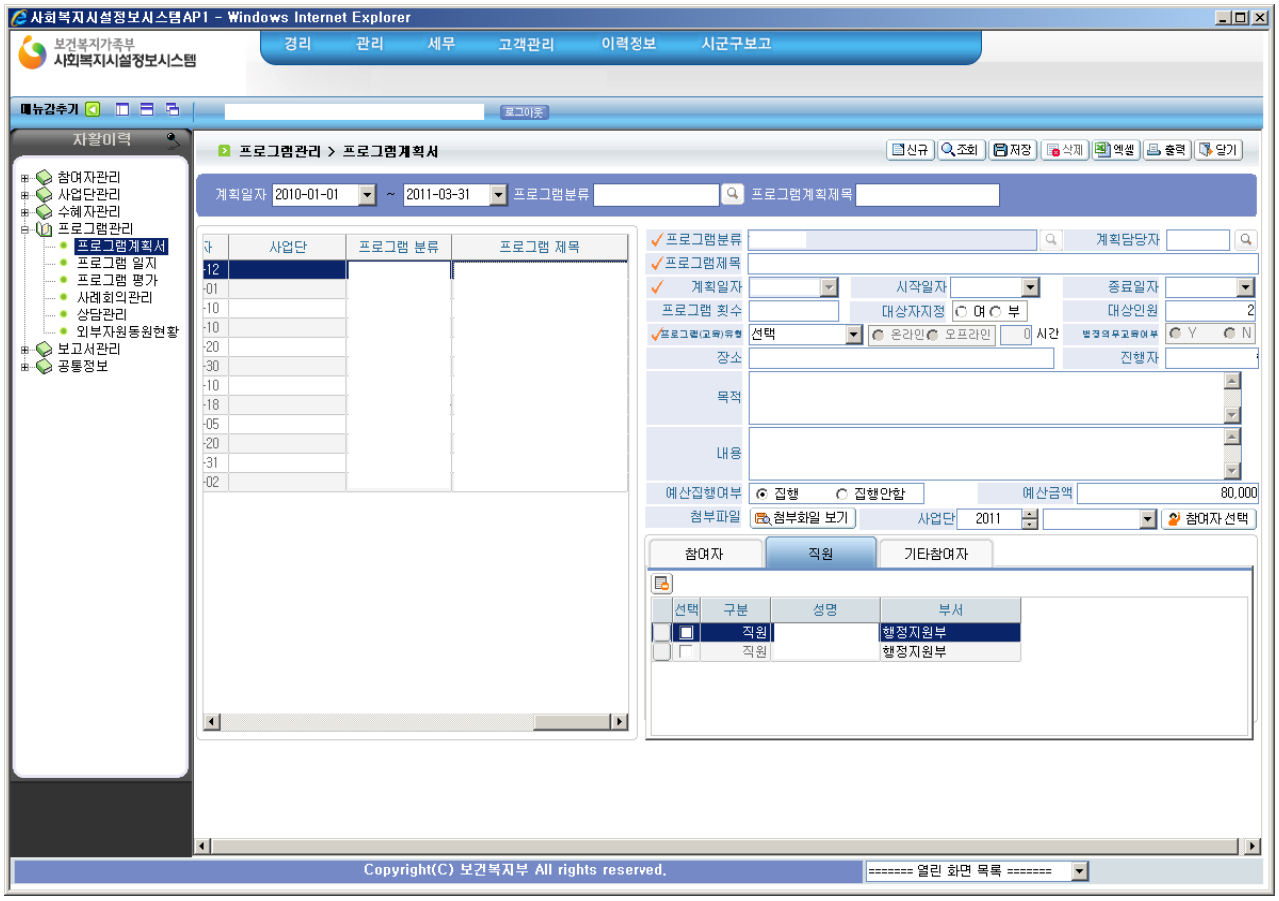

-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력을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프로그램분류, 프로그램제목, 계획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프로그램(교육)유형, 온/오프라인, 시간, 법정의무교육여부, 직원
- 프로그램유형 : 직무교육→교육

4. 센터운영

(2) 종사자 근속년수

○ [관리] 〉 [인사관리] 〉 [인사카드관리]

- 종사자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이름, 시설입사일, 퇴사일(퇴사했을 경우), 급여지급기준

※ 급여지급기준

· 인건비 : 급여를 “인건비”로 지급할 경우

· 사업비 : 급여를 “사업비”로 지급할 경우

4. 센터운영

(3) 외부자원 후원

○ [이력정보] 〉 [프로그램관리] 〉 [외부자원동원현황]

- 외부자원 동원에 대한 현황을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년도, 연계기관명, 지원구분, 지원금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관코드
및
자활사업 성과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

각 지역자활센터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명	기관코드	아이디
1	강원도	강릉시	강원강릉지역자활센터	Z0110	LGW001C
2	강원도	고성군	강원고성지역자활센터	Z0075	LGW002C
3	강원도	동해시	강원동해지역자활센터	Z0019	LGW003C
4	강원도	삼척시	강원삼척지역자활센터	Z0179	LGW004C
5	강원도	속초시	강원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	Z0210	LGW005C
6	강원도	양양군	강원양양지역자활센터	Z0126	LGW006C
7	강원도	영월군	강원영월지역자활센터	Z0345	LGW007C
8	강원도	원주시	강원원주지역자활센터	Z0292	LGW008C
9	강원도	인제군	강원인제지역자활센터	Z0253	LGW009C
10	강원도	정선군	강원정선지역자활센터	Z0236	LGW010C
11	강원도	춘천시	강원춘천지역자활센터	Z0161	LGW011C
12	강원도	태백시	강원태백지역자활센터	Z0635	LGW012C
13	강원도	평창군	강원평창지역자활센터	Z0137	LGW013C
14	강원도	홍천군	강원홍천지역자활센터	Z5521	LGW016C
15	강원도	화천군	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Z0155	LGW014C
16	강원도	횡성군	강원횡성지역자활센터	Z0452	LGW015C
17	경기도	고양시	경기고양지역자활센터	Z0392	LGG001C
18	경기도	광명시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	Z0309	LGG002C
19	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Z0107	LGG003C
20	경기도	구리시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Z0216	LGG004C
21	경기도	군포시	경기군포지역자활센터	B2088	LGG005C
22	경기도	김포시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Z0052	LGG006C
23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	Z0195	LGG007C
24	경기도	부천시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Z0424	LGG008C
25	경기도	부천시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Z0453	LGG009C
26	경기도	부천시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Z0467	LGG010C
27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Z0399	LGG012C
28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Z0187	LGG011C
29	경기도	수원시	경기수원우만지역자활센터	B2699	LGG014C
30	경기도	수원시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Z0305	LGG013C
31	경기도	수원시	경기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Z0500	LGG015C
32	경기도	시흥시	경기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Z0437	LGG016C
33	경기도	시흥시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Z0442	LGG017C
34	경기도	안산시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Z0135	LGG019C

번호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명	기관코드	아이디
35	경기도	안산시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Z0197	LGG018C
36	경기도	안성시	경기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Z5416	LGG033C
37	경기도	안양시	경기안양지역자활센터	Z0115	LGG021C
38	경기도	양주시	경기양주지역자활센터	Z0167	LGG022C
39	경기도	양평군	경기양평지역자활센터	Z0258	LGG023C
40	경기도	여주군	경기여주지역자활센터	Z0251	LGG024C
41	경기도	오산시	경기오산지역자활센터	Z0256	LGG025C
42	경기도	용인시	경기용인지역자활센터	Z0250	LGG026C
43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Z0240	LGG027C
44	경기도	파주시	경기파주지역자활센터	Z0189	LGG028C
45	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지역자활센터	Z0466	LGG029C
46	경기도	포천시	경기포천지역자활센터	Z0508	LGG030C
47	경기도	하남시	경기하남지역자활센터	Z0275	LGG031C
48	경기도	화성시	경기화성지역자활센터	Z0057	LGG032C
49	경상남도	거제시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Z0213	LGN001C
50	경상남도	거창군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Z0070	LGN002C
51	경상남도	고성군	경남고성지역자활센터	Z0077	LGN003C
52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김해지역자활센터	Z0226	LGN004C
53	경상남도	남해군	경남남해지역자활센터	Z0577	LGN005C
54	경상남도	밀양시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	Z0163	LGN008C
55	경상남도	사천시	경남사천지역자활센터	Z0242	LGN009C
56	경상남도	산청군	경남산청지역자활센터	Z0215	LGN010C
57	경상남도	양산시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Z0015	LGN011C
58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진주지역자활센터	Z0087	LGN012C
59	경상남도	진해시	경남진해지역자활센터	Z0243	LGN013C
60	경상남도	창녕군	경남창녕지역자활센터	Z0414	LGN014C
61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마산지역자활센터	Z0624	LGN006C
62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Z0456	LGN007C
63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Z0018	LGN015C
64	경상남도	통영시	경남통영지역자활센터	Z0358	LGN016C
65	경상남도	하동군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	Z0264	LGN017C
66	경상남도	함안군	경남함안지역자활센터	Z0227	LGN018C
67	경상남도	함양군	경남함양지역자활센터	Z0248	LGN019C
68	경상남도	합천군	경남합천지역자활센터	Z0623	LGN020C

번호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명	기관코드	아이디
69	경상북도	경산시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	Z0573	LGB001C
70	경상북도	경주시	경북경주지역자활센터	Z0221	LGB002C
71	경상북도	고령군	경북고령지역자활센터	Z0183	LGB003C
72	경상북도	구미시	경북구미지역자활센터	Z0053	LGB004C
73	경상북도	군위군	경북군위지역자활센터	Z0434	LGB005C
74	경상북도	김천시	경북김천지역자활센터	Z0112	LGB006C
75	경상북도	문경시	경북문경지역자활센터	Z0027	LGB007C
76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봉화지역자활센터	Z0090	LGB008C
77	경상북도	상주시	경북상주지역자활센터	Z0214	LGB009C
78	경상북도	성주군	경북성주지역자활센터	Z0068	LGB010C
79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Z0008	LGB011C
80	경상북도	영덕군	경북영덕지역자활센터	Z0056	LGB012C
81	경상북도	영주시	경북영주지역자활센터	Z0045	LGB013C
82	경상북도	영천시	경북영천지역자활센터	Z0003	LGB014C
83	경상북도	예천군	경북예천지역자활센터	Z0257	LGB015C
84	경상북도	울진군	경북울진지역자활센터	Z0054	LGB016C
85	경상북도	청도군	경북청도지역자활센터	Z0228	LGB017C
86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칠곡지역자활센터	Z0025	LGB018C
87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Z0032	LGB020C
88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Z0117	LGB019C
89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	Z0069	LGJ001C
9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Z5552	LGJ009C
91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Z0272	LGJ002C
92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Z0587	LGJ003C
93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Z0584	LGJ004C
94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Z0588	LGJ005C
95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Z0603	LGJ006C
96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Z0365	LGJ008C
97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Z0366	LGJ007C
98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Z0245	LDG001C
99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달서구지역자활센터	Z0186	LDG002C
1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Z5440	LDG009C
10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달성구지역자활센터	Z0182	LDG003C
102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Z0252	LDG004C

번호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명	기관코드	아이디
103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Z0262	LDG005C
104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Z0148	LDG006C
105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수성구지역자활센터	Z0290	LDG007C
106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	Z0004	LDG008C
10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대덕구지역자활센터	Z0317	LDJ001C
108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동구지역자활센터	Z0220	LDJ002C
109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Z0111	LDJ003C
1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Z5468	LDJ005C
111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Z0109	LDJ004C
112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구지역자활센터	Z0113	LBS001C
1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금정구지역자활센터	E0098	LBS002C
114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기장지역자활센터	Z0049	LBS003C
115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지역자활센터	Z0162	LBS004C
116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동구지역자활센터	Z0390	LBS005C
117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Z0154	LBS006C
118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Z0108	LBS008C
119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Z0030	LBS009C
120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지역자활센터	Z0101	LBS010C
12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Z0007	LBS012C
1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Z0458	LBS011C
123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서구지역자활센터	E0136	LBS013C
124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Z0059	LBS014C
125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연제지역자활센터	Z0006	LBS015C
126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Z0207	LBS016C
127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중구지역자활센터	Z0391	LBS017C
128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진지역자활센터	Z0271	LBS007C
1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해운대지역자활센터	Z0091	LBS018C
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Z0067	LSU001C
13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	Z0328	LSU002C
132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Z0342	LSU003C
133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강서방화지역자활센터	Z0493	LSU006C
134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Z0005	LSU005C
135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	Z0329	LSU004C
136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Z0051	LSU008C

번호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명	기관코드	아이디
137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Z0377	LSU009C
138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Z0157	LSU007C
1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Z0315	LSU010C
140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Z0327	LSU012C
141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구로지역자활센터	Z0337	LSU011C
14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금천지역자활센터	Z0607	LSU013C
14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Z0481	LSU015C
14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Z0102	LSU016C
14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Z0476	LSU014C
146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도봉지역자활센터	Z0320	LSU017C
1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Z0473	LSU018C
14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	Z0522	LSU019C
14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마포지역자활센터	Z0283	LSU020C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서대문지역자활센터	Z0073	LSU021C
1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Z0065	LSU022C
15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성북지역자활센터	Z0492	LSU023C
1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송파지역자활센터	Z0488	LSU024C
154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Z0475	LSU025C
1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	Z0017	LSU026C
15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Z0344	LSU027C
157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Z0244	LSU028C
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종로지역자활센터	Z0314	LSU029C
159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Z0319	LSU030C
160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Z0407	LSU031C
161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	Z0188	LUS001C
162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Z0131	LUS002C
163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Z0408	LUS003C
16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울주지역자활센터	Z0313	LUS005C
165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	Z0334	LUS004C
166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	Z0340	LIC001C
167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Z0281	LIC002C
168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남구미추홀지역자활센터	Z0222	LIC004C
169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남구지역자활센터	Z0255	LIC003C
1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	Z0249	LIC005C

번호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명	기관코드	아이디
171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Z0142	LIC006C
172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Z0440	LIC009C
173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Z0298	LIC007C
174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Z0204	LIC010C
175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Z0469	LIC011C
176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Z0436	LIC012C
177	전라남도	강진군	전남강진지역자활센터	Z0132	LJN001C
178	전라남도	고흥군	전남고흥지역자활센터	Z5515	LJN022C
179	전라남도	곡성군	전남곡성지역자활센터	Z0042	LJN003C
180	전라남도	광양시	전남광양지역자활센터	Z0040	LJN002C
181	전라남도	나주시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Z0047	LJN004C
182	전라남도	담양군	전남담양지역자활센터	Z0153	LJN005C
183	전라남도	목포시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Z0622	LJN006C
184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	Z0048	LJN007C
185	전라남도	보성군	전남보성지역자활센터	Z0064	LJN008C
186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순천지역자활센터	Z0026	LJN009C
187	전라남도	신안군	전남신안지역자활센터	Z0055	LJN010C
188	전라남도	여수시	전남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	Z0241	LJN012C
189	전라남도	여수시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	Z0209	LJN011C
190	전라남도	영광군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Z0088	LJN013C
191	전라남도	영암군	전남영암지역자활센터	Z0074	LJN014C
192	전라남도	완도군	전남완도지역자활센터	Z0276	LJN015C
193	전라남도	장성군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Z0066	LJN016C
194	전라남도	장흥군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	Z0361	LJN017C
195	전라남도	진도군	전남진도지역자활센터	Z0039	LJN018C
196	전라남도	함평군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	Z0097	LJN019C
197	전라남도	해남군	전남해남지역자활센터	Z0041	LJN020C
198	전라남도	화순군	전남화순지역자활센터	Z0160	LJN021C
199	전라북도	고창군	전북고창지역자활센터	Z0152	LJB001C
200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Z0572	LJB002C
201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Z0576	LJB003C
202	전라북도	김제시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Z0265	LJB004C
203	전라북도	남원시	전북남원지역자활센터	Z0158	LJB005C
204	전라북도	무주군	전북무주지역자활센터	Z0123	LJB006C

번호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명	기관코드	아이디
205	전라북도	부안군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Z0468	LJB007C
206	전라북도	순창군	전북순창지역자활센터	Z0043	LJB008C
207	전라북도	완주군	전북완주지역자활센터	Z0038	LJB009C
208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Z0029	LJB011C
209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익산지역자활센터	Z0605	LJB010C
210	전라북도	임실군	전북임실지역자활센터	Z0127	LJB012C
211	전라북도	장수군	전북장수지역자활센터	Z0490	LJB013C
212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Z0173	LJB015C
213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	Z5439	LJB016C
214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전주지역자활센터	Z0206	LJB014C
215	전라북도	정읍시	전북정읍지역자활센터	Z0254	LJB017C
216	전라북도	진안군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Z0301	LJB018C
2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Z0515	LJJ001C
2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Z0570	LJJ003C
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Z0035	LJJ004C
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Z0076	LJJ002C
221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공주지역자활센터	Z0020	LCN001C
222	충청남도	금산군	충남금산지역자활센터	Z0235	LCN002C
223	충청남도	논산시	충남논산지역자활센터	Z0586	LCN003C
224	충청남도	당진군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Z0028	LCN004C
225	충청남도	보령시	충남보령지역자활센터	Z0540	LCN005C
226	충청남도	부여군	충남부여지역자활센터	Z0557	LCN006C
227	충청남도	서산시	충남서산지역자활센터	Z0524	LCN007C
228	충청남도	서천군	충남서천지역자활센터	Z0044	LCN008C
229	충청남도	아산시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Z0177	LCN009C
230	세종특별자치도	-	세종지역자활센터	Z0156	LCN010C
231	충청남도	예산군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Z0528	LCN011C
232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천안지역자활센터	Z0610	LCN012C
233	충청남도	청양군	충남청양지역자활센터	Z0143	LCN013C
234	충청남도	태안군	충남태안지역자활센터	Z0266	LCN014C
235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Z0089	LCN015C
236	충청북도	괴산군	충북괴산지역자활센터	Z0190	LCB001C
237	충청북도	단양군	충북단양지역자활센터	Z0081	LCB002C
238	충청북도	보은군	충북보은지역자활센터	Z0100	LCB003C

번호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명	기관코드	아이디
239	충청북도	영동군	충북영동지역자활센터	Z0333	LCB004C
240	충청북도	옥천군	충북옥천지역자활센터	Z0192	LCB005C
241	충청북도	음성군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Z0270	LCB006C
242	충청북도	제천시	충북제천지역자활센터	Z0360	LCB007C
243	충청북도	증평군	충북증평지역자활센터	Z0591	LCB008C
244	충청북도	진천군	충북진천지역자활센터	Z0149	LCB009C
245	충청북도	청원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Z0106	LCB010C
246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Z0082	LCB011C
247	충청북도	충주시	충북충주지역자활센터	Z0114	LCB012C